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호주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면적	7,692,024 km (자료원 : 호주통계청, 2019 기준)
수도	캔버라(Canberra)
인구	25,649,985 명 (자료원 : 호주통계청, 2020 기준)
민족(인종)	영국계(36.1%), 호주계(33.5%), 중국계(5.6%), 인도계(4.6%) 등 (2016년 기준)
언어	영어
종교	천주교(22.6%), 영국성공회(13.3%), 기타 기독교(16.1%), 이슬람교(2.6%), 불교(2.4%) 등
기후	북부: 열대 남부: 온대 서부: 열대
국가원수	군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Queen Elizabeth II) 총독: 데이빗 헐리(David Hurley) 총리: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61-10-30 (자료원 : 호주 외무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문화협정	1972-07-09	문화협정 발효	
무역 및 경제관계발전협정	1975-06-17	무역 및 경제관계발전협정 발효	
원자력평화이용 및 핵물질이전협정	1979-05-02	원자력평화이용 및 핵물질이전협정 발효	
어업협정	1983-11-24	어업협정 발효	
세관당국 간 상호지원양해각서	1988-08-09	세관당국 간 상호지원양해각서 발효	
항공협정	1992-04-09	항공협정 발효	
산업기술협력약정	1993-06-22	산업기술협력약정 발효	
경제공동위설치약정	1993-12-17	경제공동위설치약정 발효	
형사사법공조조약	1993-12-19	형사사법공조조약 발효	
취업관광(Working Holiday)비자발급협정	1995-07-01	취업관광(Working Holiday)비자발급협정 발효	
핵물질 재이전교환각서	1997-11-14	핵물질 재이전교환각서 발효	
민사사법공조 조약	2000-01-16	민사사법공조 조약 발효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2000-04-05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발효	
에너지 및 광물자원협력협정	2005-10-18	에너지 및 광물자원협력협정 발효	
철새보호협정	2007-07-13	철새보호협정 발효	2015년 12월 3일 개정안 발효
사회보장협정	2008-10-01	사회보장협정 발효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010-12-09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발효	

자유무역협정	2014-12-12	자유무역협정 발효	
--------	------------	-----------	--

〈자료원 : 한국외교부〉

한국교민 수

167,331 명 (자료원 : 한국외교부/2019년12월)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한-호 포함한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 공동성명 발표

믹타(MIKTA)는 제68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출범한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서 5개국 외교장관들은 코로나 19 및 국제보건에 관한 공동성명을 2020년 4월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이 믹타(MIKTA) 의장국으로 외교장관들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믹타 회원국 간 연대와 국제적 정책 공조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각국의 방역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도적, 과학적, 필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쉽게 하고 이번 세계 보건 위기 극복을 위한 믹타 회원국의 연대 표명과 앞으로 회원국 간 보건분야 협력의사를 확인했다. 또한, 한국과 호주 양국은 국방, 수소 경제, 핵심 광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동반자 관계를 다질 것을 약속했다.

○ 양국 정상,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정상통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국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2020년 4월 7일과 2020년8월14일 정상통화를 한 바 있다. 2020년4월, 양국은 코로나19 대응에의 상호 협조를 당부했다면 2020년8월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양국이 협력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했다. 2020년 하반기 이루어진 2차 정상통화에서 정상들은 양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G7과 믹타(MIKTA)의 발전 방안과 함께 전세계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및 공급에서의 협력을 논의했다. 2021년에는 한-호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 지향적인 동반자적 성장 관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한-호 포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타결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포함된 15개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하여2020년11월15일 최종 타결되었다. 해당 협정은 2012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지난 2019년 타결 예정이었으나 인도의 합의 거부로 미루어진 바 있다. 협정 발효까지는 각국간의 의견조율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일을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세계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질서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 한국 5개 사 코로나 19 테스트 키트 TGA 인증받아 호주 유통

호주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모든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호주 보건부 산하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는 한국 5개 사의 코로나 19 테스트 제품에 대해 시장에 유통되기 전 실시하는 적합성 평가 인증서를 발부했다. 이로써 현장 진료 테스트 키트와 실험실 키트에 쓸 수 있는 한국 제품은 호주 시장에 성공적으로 판매되는 기회를 가진다. TGA 인증은 유럽의 CE 인증서와 적합성 평가 증빙 서류로 상호인증할 만큼 공신력 있는 제도로 이번 호주 ARTG(Australian Register of Therapeutic Goods)에 등록된 한국 업체는 2020년

7월 기준 제네바주식회사, 피씨엘, 코젠바이오텍, 랩지노믹스, 씨젠 총 5개사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기가 더 많이 진출해 보건·바이오메디컬 유망산업 분야의 한·호 경제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 한·호 장관급 에너지 협력 논의

한국과 호주는 2020년 6월 2일 코로나 19 확산 여파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 현황과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한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회의에서 코로나 19 확산 추세에도 양국이 신속한 대응 조치를 통해 안정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했으며 코로나 19로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주요 소비국인 한국과 주요 생산국인 호주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확보에 이바지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에너지·자원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코로나 19가 안정되면 실장급 회의인 제30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올해 하반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한·호주 민간 경제협의체, 수소/바이오·헬스 산업에의 협력강화 논의

한국의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2020년 11월 24일 한국과 호주의 민간 경제협의체인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의 제41차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수소 산업과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수소 산업의 경우, 호주는 풍부한 갈탄 매장량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로 그린수소의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글로벌 3대 수소 수출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2019년 1월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 철강 및 자동차 산업에서의 수소 활용에 강점이 있어 생산과 활용 측면에서 양국 간 협력할 여지가 높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우, 코로나 19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코로나 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들로서 해당 분야에의 공동 연구 및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화

○ 19년 연속의 최장기간 후원사, 기아차의 2020년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후원

1905년 시작된 호주오픈 테니스대회는 미국의 US오픈, 영국의 ويم블던, 프랑스의 프랑스 오픈과 함께 세계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이다. 기아차는 2002년부터 이 대회를 공식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유일한 메이저 후원자로서 대회 공식 차량으로 총 130대의 기아차를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기아차 글로벌 홍보대사 라파엘 나달(Rafael Nadal) 선수 및 온라인 인플루언서 12명과 함께 대회를 관람하기 위해 호주를 방문한 전 세계 고객들 대상의 체험형 행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후원활동을 통해 기아차는 호주 내 판매율 상승뿐만 아니라 한국차의 우수성과 혁신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맞아 호주 참전 용사를 기리는 캠페인 진행

주호주 한국문화원, 주호주 한국 총영사관과 호주 앤잭전쟁기념관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2020년 6월 22일부터 약 한 달간 호주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호주 시드니 및 멜버른 중심가를 운행하는 경전철 및 트램 차량 외부에 참전용사 8명의 사진과 'Lest Korea Forget(한국이 잊지 않도록)' 문구를 새겨 호주와 한국 양국 국민에게 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호주가 유엔 가입 이후 처음으로 참전한 한국전쟁에서 호주 군인 1만 7,164명이 참전해 340명이 전사하고 1,216명이 상처를 입었다. 해당 행사에 참여한 이언 크로포드 전 호주 해군 제독은 이 행사에 소개된 8명의 참전용사 중 한 명으로 한국전쟁 참전을 호주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 너무 감동적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	2.3	2.8	2.4	1.8	-
명목GDP (십억\$)	1,266.8	1,386.9	1,420.6	1,397.6	-
1인당 GDP (PPP, \$)	49,218.89	50,560.91	52,379.46	53,378.53	-
1인당 명목 GDP (\$)	51,978.95	55,973.64	56,420.2	53,825.16	-
정부부채 (% of GDP)	40.46	41.07	41.37	41.76	-
물가상승률 (%)	1.5	1.9	1.7	1.8	-
실업률 (%)	5.7	5.58	5.29	5.14	-
수출액 (백만\$)	192,504.5	231,130.83	257,097.52	270,982.08	-
수입액 (백만\$)	189,306.41	221,368.26	227,011.56	213,750.41	-
무역수지 (백만\$)	3,198.09	9,762.57	30,085.96	57,231.67	-
외환 보유고 (백만\$)	50,982.29	63,678.05	51,155.66	56,439.56	37,247.52
이자율 (%)	1.5	1.5	1.5	0.25	-
환율 (자국통화)	1.38	1.28	1.42	1.46	1.54

〈자료원 : EIU, IMF, OECD, 호주 통계청, 호주 재무부, Global Trade Atlas, UNCTAD Stat〉

경제 동향

호주 경제는 산불 사태와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주요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성장 정체를 보여 왔으며, 정부 부채 증가, 불완전고용, 임금 정체, 기업 투자 하락, 가계부채, 저생산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 2020년 3월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 19는 시장평가 기관 S&P의 호주 국가 신용도 AAA를 위협하는 호주 경제 최대 위기를 불러왔으며 그 결과 2020년 상반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공식 경기불황에 돌입했다.

호주 중앙은행은 호주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0.10%로 인하했으며 이는 세계 금융위기하에서도 시행

하지 않았던 양적 완화 조치를 한 것으로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현재 경기침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3월 23일부터 두 달간 지속되었던 국가 봉쇄조치(Lock-down) 시행 및 국경 차단으로 전체 호주 산업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관광, 여행, 항공산업 중심의 서비스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여기에 해외 방문객, 유학생, 근로자들의 유입이 불가능해지고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대거 출국해 주택 임대업 및 교육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주 고용시장은 이미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어 지난 5년간 6% 이하를 유지했던 실업률은 호주 통계청 7월 기준 7.5%까지 상승했으며 10월에는 소폭 하락해 7.0%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 관련하여 호주 정부의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 대상 대표적인 경제 부양책으로는 일회성 현금 지급, 기본 소득 지원, 일자리 유지 보조금 지급, 연금 선 인출 허용, 세입자 보호 등이 있다. 여기에 수출자를 위한 물류비용 지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국내 제조사 대상 정부 조달 사업에 적극 지원 유치, 소규모 사업자 대상 현금 유동성 지원 등 기업 대상 지원으로 시장 유동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2020년 4월 호주가 중국에 코로나19 발병 원인 규명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면서 양국 간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호주에 있어 제1의 무역상대국이자 주요 투자국이지만 2018년 호주가 중국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를 금지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호주의 코로나19 발병 원인 규명 촉구로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호주 정부를 대상으로 무역보복조치를 지속할 것을 경고하며 압박을 가해오는 상황이다. 중국에의 과도한 경제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호주는 진퇴양난의 경제적 상황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전망

IMF의 2020년 4월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호주의 국내총생산(GDP)은 -6.7%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한국(-1.2%)보다 낮은 수치이며 2021년에는 한국 경제가 3.4%, 호주경제는 6.1% 성장하며 반등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호주는 2020년1분기 경제성장률 -0.3%, 2분기 -7.0%로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하락을 기록하며 9월2일 경기불황을 공식 선언했다. 호주 준비은행은 2020년 평균 GDP 성장률을 -6.0%, 2021년에는 4.0%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매 분기 전망치가 달라지고 있어 호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2020년 7월, 하반기 실업률이 1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의 전반적인 완화 추세에 따라 2020년 11월 실업률은 6.8%를 기록했다.

소비심리는 봉쇄조치(Lock-down) 해제 완화 시 일시 상승했으나 일자리 위기와 소득 감소로 인한 가계 경제 악화로 위축되었다. 특히, 빅토리아주에 발생한 2차 코로나19 재확산 기간 동안 해당 주 봉쇄정책 및 위기감 상승이 전반적인 소비심리 회복을 어렵게 했다. 다만, 2020년 11월 시점으로 호주 내 지역감염 발생 사례가 한 달 이상 0명에 머물고 있어 호주의 휴가철이자 최대 성수기인 연말 소비심리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호주 재무부에 따르면 2019-20년 정부재정 적자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최대일 것으로 예상했다. 호주 준비은행에 따르면 코로나 부양책으로 약 2,990억 호주달러가 지출되었으며 호주 정부의 순부채는 2020년 6월 30일 GDP의 24.8%인 4,912억 호주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동기 순부채는 전체 GDP의 36.1%까지 늘어나 7,032억 호주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2020/2021년 호주 연방 정부 예산은 1,979억 호주달러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호주 연방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확대 프로젝트, 기술인력 양성 사업 등 경제성장을 위한 기존 사업을 지속하는 가운데, GDP의 16.4%에 해당하는 3,200억 호주달러 상당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재난 지원금, 실업수당 확대 등 정책을 긴급 도입하며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 중앙은행은 2020년 이미 3차례에 걸쳐 제로금리에 가깝게 금리를 인하하였고 호주의 경기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당분간 0.10% 금리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55,089,560,748
2	Areas, nes	23,870,100,178
3	일본	18,860,982,450
4	대한민국	11,150,441,856
5	미국	8,259,223,932
6	영국	7,412,035,888
7	인도	7,361,013,059
8	홍콩	7,180,087,378
9	뉴질랜드	6,383,590,155
10	Other Asia, nes	5,159,429,308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76,404,555,358
2	일본	33,686,957,795
3	대한민국	15,527,653,151
4	인도	11,961,839,702
5	홍콩	9,180,500,094
6	미국	8,859,468,100
7	뉴질랜드	6,866,544,172
8	Other Asia, nes	6,620,349,288
9	인도네시아	5,103,122,435

10	싱가포르	5,042,517,442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87,726,223,589
2	일본	41,355,758,336
3	대한민국	17,745,602,966
4	인도	12,369,310,824
5	미국	9,552,812,627
6	Other Asia, nes	7,812,952,963
7	홍콩	7,676,458,191
8	싱가포르	7,327,462,035
9	뉴질랜드	7,167,240,161
10	말레이시아	5,525,383,076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02,995,844,158
2	일본	39,794,647,705
3	인도	17,767,375,479
4	대한민국	17,596,003,358
5	미국	10,930,446,526
6	영국	10,720,299,883
7	Other Asia, nes	8,838,419,725
8	싱가포르	8,582,581,864
9	말레이시아	7,989,581,514
10	뉴질랜드	7,086,233,983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43,623,286,850
2	미국	21,424,689,359
3	일본	14,391,945,451
4	타이	10,659,396,633
5	독일	10,031,173,431
6	대한민국	7,849,148,306
7	말레이시아	6,834,041,760
8	뉴질랜드	5,593,718,875
9	영국	5,288,523,614
10	싱가포르	5,117,501,729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50,864,622,707
2	미국	24,146,243,793
3	일본	16,720,322,693
4	대한민국	16,391,176,797
5	타이	11,359,233,281
6	Areas, nes	11,332,706,193
7	독일	10,851,407,372
8	말레이시아	8,583,694,911
9	싱가포르	6,502,008,370
10	뉴질랜드	6,111,088,201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57,699,419,834
2	미국	24,664,655,770
3	일본	17,351,098,723
4	독일	11,623,553,691

5	타이	11,523,926,561
6	대한민국	10,182,483,185
7	말레이시아	9,912,705,222
8	싱가포르	8,822,140,382
9	뉴질랜드	6,057,060,457
10	영국	5,604,746,438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56,946,554,157
2	미국	26,504,393,680
3	일본	16,026,665,069
4	타이	10,805,929,931
5	독일	10,612,689,586
6	대한민국	8,968,894,962
7	말레이시아	7,867,235,553
8	싱가포르	7,791,272,848
9	뉴질랜드	5,579,807,491
10	영국	5,280,642,556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39,507,338,263
2	270112	유연탄	29,532,161,684
3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3,432,628,519
4	271111	천연가스	13,368,660,709
5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328,002,189

6	281820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4,103,103,018
7	100199	기타	3,561,934,621
8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527,584,754
9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3,488,981,254
10	020230	뼈 없는 것	3,062,967,106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48,346,945,880
2	270112	유연탄	43,298,265,732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34,441,560,212
4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3,003,947,336
5	100199	기타	4,542,430,454
6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3,669,410,496
7	020230	뼈 없는 것	3,195,959,166
8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191,902,816
9	510111	깎은 양모	2,606,681,480
10	020130	뼈 없는 것	2,202,029,076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112	유연탄	49,679,004,609
2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46,902,417,262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5,566,909,720
4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3,968,666,851
5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731,691,448
6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4,476,140,884
7	020230	뼈 없는 것	3,645,453,951
8	100199	기타	2,983,032,255
9	510111	깎은 양모	2,698,268,689

10	7601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2,597,746,023
----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66,247,198,210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7,480,173,732
3	270112	유연탄	44,245,101,510
4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6,117,004,372
5	270119	그 밖의 석탄	8,323,638,000
6	020230	뼈 없는 것	4,412,891,767
7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4,310,272,396
8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258,161,123
9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2,683,857,840
10	020130	뼈 없는 것	2,617,793,865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8,625,427,436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 3,000cc 이하인 것	7,969,621,214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903,676,026
4	300490	기타	4,711,745,549
5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4,205,886,849
6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599,687,909
7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2,842,427,483
8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2,812,854,988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734,882,914
10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cc를 초과하는 것	2,506,355,427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5,118,973,648
2	271019	기타	12,018,873,200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9,001,712,760
4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7,506,614,034
5	890520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200,551,565
6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5,266,382,111
7	300490	기타	4,429,988,732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165,865,111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354,039,772
10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3,102,199,994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6,006,359,928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0,591,769,550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8,827,129,560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353,651,585
5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5,602,189,277
6	300490	기타	4,382,923,295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296,702,380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678,726,105
9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3,578,706,519
10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3,307,424,295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4,703,316,383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8,790,278,789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7,663,376,761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825,826,537
5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4,735,285,793
6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4,712,570,609
7	300490	기타	4,425,679,388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004,742,028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545,164,757
10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3,453,694,191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6	7,501	15,176	-7,675
2017	19,862	19,160	702
2018	9,610	20,719	-11,109
2019	7,891	20,608	-12,717
2020	5,011	15,071	-10,06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2,008	0	2,007
2	1332	경유	1,065	0	1,064
3	1331	휘발유	530	0	529
4	1333	제트유및등유	1,127	0	1,126
5	8352	축전지	142	0	141
6	2140	합성수지	123	3	120
7	6212	알루미늄조가공품	108	3	104
8	7251	건설중장비	109	1	107
9	6134	아연도강판	82	1	80
10	2283	수산화나트륨	74	0	7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7411	승용차	1,281	0	1,281
2	1332	경유	710	0	710
3	1331	휘발유	328	0	328
4	1333	제트유및등유	171	0	171
5	8352	축전지	126	1	125
6	2140	합성수지	90	2	88
7	6212	알루미늄조가공품	89	2	87
8	7251	건설중장비	87	2	85
9	6134	아연도강판	71	0	71
10	2283	수산화나트륨	69	0	69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120	철광	0	4,705	-4,706
2	1322	유연탄	0	5,331	-5,332
3	1340	천연가스	0	3,739	-3,740
4	0221	가축육류	0	1,267	-1,267
5	1130	동광	0	510	-511
6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648	-648
7	1190	기타금속광물	0	539	-539
8	1310	원유	0	498	-499
9	0111	곡류	1	345	-345
10	1160	아연광	0	307	-308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120	철광	0	3,880	-3,880
2	1322	유연탄	0	2,967	-2,967
3	1340	천연가스	0	2,538	-2,538
4	0221	가축육류	0	1,080	-1,080

5	1130	동광	0	681	-681
6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607	-607
7	1190	기타금속광물	0	489	-489
8	1310	원유	0	441	-441
9	0111	곡류	1	296	-295
10	1160	아연광	15	256	-24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호주-뉴질랜드 공동시장화 협정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ANCERTA)	뉴질랜드	1982-12-14	1983-01-01	
싱가포르-호주 자유무역협정 Singapore-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SAFTA)	싱가포르	2003-02-17	2003-07-28	
호주-미국 자유무역협정 A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AUSFTA)	미국	2004-05-18	2005-01-01	
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Thailand-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TAFTA)	태국	2004-07-05	2005-01-01	
호주-칠레 자유무역협정 Australia-Chile Free Trade Agreement (ACIFTA)	칠레	2008-07-30	2009-03-06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 역지역 ASEAN-Australia- New Zealand Free Trade Area (AANZFTA)	뉴질랜드, 브루나이, 버마, 말레 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2009-02-27	2010-01-01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 역지역 ASEAN-Australia- New Zealand Free Trade Area (AANZFTA)	태국	2009-02-27	2010-03-12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 역지역 ASEAN-Australia- New Zealand Free Trade Area (AANZFTA)	라오스	2009-02-27	2011-01-01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 역지역 ASEAN-Australia- New Zealand Free Trade Area (AANZFTA)	캄보디아	2009-02-27	2011-02-04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 역지역 ASEAN-Australia- New Zealand Free Trade Area (AANZFTA)	인도네시아	2009-02-27	2012-01-10	
말레이시아-호주 자유무역협정 Malaysi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MAFTA)	말레이시아	2012-05-22	2013-01-01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KAFTA)	한국	2014-04-08	2014-12-12	
일본-호주 경제 동반자 협정 Japan-Austral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JAEPA)	일본	2014-07-08	2015-01-15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 Chin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ChAFTA)	중국	2015-06-17	2015-12-20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 반자 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TPP-11)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 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2018-03-08	2018-12-30	
호주-홍콩 자유무역협정 Australia-Hong Kong Free Trade Agreement (A- HKFTA)	홍콩	2019-03-26	2020-01-17	
태평양지역경제협력협정	뉴질랜드, 키리바티, 나우루, 니 우에, 사모아, 솔로몬 제국, 통 가, 투발루	2017-06-14		미발효
페루-호주 자유무역협정 Peru-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PAFTA)	페루	2018-02-12	2020-02-11	
인도네시아-호주 포괄적 경제협 력 협정 Indonesia-Austral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A- CEPA)	인도네시아	2020-05-14	2020-07-05	
지역별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 본, 호주, 뉴질랜드	2020-11-15		미발효

〈자료원 : 호주외무부〉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태평양지역경제협력협정 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ACER Plus)	뉴질랜드, 키리바티, 나우루, 니우에, 사모 아, 솔로몬 제국, 통가, 투발루	2020년 3월 27일 각 국가들 협정 비준 중	

호주-인도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 Australi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인도	협상 진행중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 정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	캐나다, 중국, 코스타 리카, 유럽연합, 홍콩, 아이슬랜드, 이스라엘 , 일본, 한국, 뉴질랜드 ,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터키, 미 국	협상 진행중	
서비스 무역 협정 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	캐나다, 칠레, 대만, 콜 롬비아, 코스타리카, 유럽연합, 홍콩, 아이 슬랜드, 이스라엘, 일 본, 리히텐슈타인, 모 리셔스, 멕시코, 뉴질 랜드, 노르웨이, 파키 스탄, 파나마, 페로, 한	협상 진행중	
태평양 동맹 자유무역협정 Pacific Alliance Free Trade Agreement	칠레, 콜롬비아, 멕시 코, 페루	협상 진행중	
호주-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Australia-European Union Free Trade Agreement	유럽연합	협상 진행중	
호주-걸프 협력 회의 자유무역협정 Australia-Gulf Cooperation Council (GCC) FTA	바레인, 쿠웨이트, 오 만, 카타르, 사우디 아 라비아, 아랍 에미리 트	협상 진행중	

〈자료원 : 호주외무부〉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호주 내 수입금지 및 규제 품목들은 호주 국경부대(Australian Border Force)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주로 식품, 식물, 동물, 무기류 및 화학약품에 대한 규제가 많으며, 동 기관 규제 품목 리스트에 있는 제품은 사전 수입허가 취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상세 품목은 해당 링크(<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prohibited-goods/list-of-items#>)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식물성 생산품 중 모든 과일과 야채는 수입 시 허가가 필요하며 위험분석 관리(Risk Analysis Management)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품목별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다.

- 사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산에 대해 수입 금지
- 배: 전 국가(단, 한국산 배는 호주 phytosanitary requirements 충족 시 수입 가능)
- 오렌지: 미국을 제외한 전 국가
- 단감: 미국(캘리포니아산에 한함)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키위: 일본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매실: 뉴질랜드산을 제외한 전 국가
- 양잠: 전 국가산에 대해 수입 금지
- 땅콩: 경작용(종자용)은 수입 금지
- 호프: 종자는 수입금지(가공생산을 위해서만 수입 허용)
- 초목류(Plant의 경우)
- 계란 수입금지(계란 함량이 10% 이상인 식품류의 경우 AQIS 허가 여부에 따라 수입 가능)
- Foot and Mouth Disease(FMD)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유가공 및 유가공 제품은 수입 불가
- 가공되지 않은 닭고기는 완전 수입 금지(레토르트, 캔에 가열 후 닭고기 중간 부위 온도가 100도씨 이상일 경우만 가능)
- 돼지고기류도 사전 허가 필요
- 한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함유 제품 수입 금지

그 밖에도 내용물이 사실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 수입이 불가하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품질 인증 제도

호주의 공산품 품질 인증 제도는 무척 까다롭게 운용되고 있다. 유럽의 EC나 미국의 UL 등 선진국 인증이 있어도 호주 인증을 다시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그런 사례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도 일부 품목에서는 까다로운 자국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의 인증제도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 QAS 마크 제도(Quality Assurance Services)

- 호주는 1966년부터 자국 내 생산 제품과 수입 제품이 호주 내 관련 기관이 정한 기술 표준과 호주 표준협회(Standard Australia)가 제시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엄격한 검사 과정을 통해 제조업체 혹은 수입업체를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기본 취지이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수입규제 요인이 되기도 한다.

- QAS(품질마크 제도)는 제품 품질 및 생산 공정이 호주의 기술 표준과 Standard Australia가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검사하는 제도이다.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라 자발성을 띤 제도로서 특정 품목의 유관 기관에서 별도의 표준을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있는 제품의 경우 미이행 시 수입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는 강제성을 띤다(예: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제정한 자동차 안전벨트의 표준 안전 기준, Urban Australian Water Authority가 정한 하수도/배관 관련 품목 안전 기준 등).

- 1966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품질을 보증하는 Standard Mark로 사용되고 있으며 적용 대상 품목은 호주 QAS의 품질보증 마크 획득을 희망하는 모든 품목이다.

- QAS는 제품 디자인(안전성, 환경, 위생, 성능 및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해 디자인됐는지 여부), 제조 공정상 품질 관리(생산 공장을 방문해 직접 제조 과정 확인), 사후 관리(품질보증 마크 획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들이 QAS 마크 부착 상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랜덤 샘플링 및 공장 방문 검사 등))를 기준으로 제품 검사를 시행한다.

○ TGA 인증 제도

- 호주에서 유통되는 모든 의료 장비들은 호주 식약처(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의 관리 제도인 ARTG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ARTG 등록을 위한 의료 기기는,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5가지(Class I, Class IIa, Class IIb, Class III, AIMD) 카테고리 구분하며, 제품의 카테고리별로 제품 등록에 대한 시간, 비용 및 요구 조건 등이 달라진다. 해외 업체가 제품에 대한 CE 인증이 있는 경우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TGA의 단계별 확인 절차를 거쳐 ARTG에 등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TGA를 통해 순응 평가 인증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e)를 신청해서 승인을 득해야 한다. 호주 TGA의 ARTG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외 제조업체가 직접 하지 못하고 호주 현지에 적을 둔 업체를 지정(스폰서)해 대신 진행해야 한다.

- 순응평가 인증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ion)는 제조업체에 발행되는 것이며 호주 내 스폰서에게는 발급되지 않는다. 순응평가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호주 식약처 소속 담당자가 해외 제조업체의 생산라인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공장에 방문하기도 하며 이때 드는 항공, 숙박 등의 모든 비용은 제조업체에서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프로세스는 비교적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비경제적이므로 호주 의료기기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CE 인증을 획득한 후 TGA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CE 인증을 이미 보유한 기업의 경우 현지 스폰서를 통해 TGA에서 제공하는 E-Business Service에 계정을 신청하고 제품의 위험 레벨에 따라 Class I 에 속하는 제품군과 Class I (Sterile), Class I (Measuring), Class II a, Class II b, Class III, AIMD에 속하는 제품군으로 나뉘어 진행하면 된다. 화장품 중 질병, 결함, 상처를 예방, 진단, 치료하거나 완화하는 기능 및 생리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TG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즉, 자외선을 차단하여 피부질환을 예방하는 선크림(Sunscreen), 주름개선, 노화방지와 같은 기능성 화장품들은 TGA 인증 필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수입업체와 협업하여 인증 필요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인증 관련 기관

○ 호주 표준 규격 제정 기관: 스탠다드 오스트레일리아(Standards Australia)

- 주소: Level 10, the Exchange Centre 20 Bridge Street. Sydney NSW 2001
- 전화: (국내) 1800 623 503, (해외에서 걸 때) (61-2) 8206 6060
- 팩스: (61-2) 9237 6010
- 이메일: researchsydney@standards.org.au
- 웹사이트: <http://www.standards.org.au>

○ 주요 인증 대행 기관 : 사이 글로벌(SAI Global) 한국지사

-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5 리더스 타워 1104호(우편번호153-023)
- 전화: 02 582 1823
- 팩스: 02 582 1826
- 이메일: korea@saiglobal.com
- 웹사이트: www.saiglobal.com

- 의약품 인증 기관 : 호주 식약처(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 주소: TGA, PO Box 100, Woden ACT 2606, Australia
 - 전화: (61-2) 6289 4124
 - 팩스: (61-2) 6203 1605
 - 이메일: info@tga.gov.au
 - 웹사이트: www.tga.gov.au

TBT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저기준 (에어컨 및 열 펌프) 결정

2017년 8월 25일, 호주 환경에너지부는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정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WTO 및 한국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에 따른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호주/뉴질랜드 표준을 다음 규정에 통합하여 에어컨 에너지 효율 평가에 계절별 에너지 효율비(SEER)를 사용한다.
 - AS/NZS 3823.4.1:2014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4.1: 공냉식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계절별 성능지표에 대한 시험 및 계산 방법 - 냉방기간 에너지 효율 (ISO 16358-1:2013, MOD) - 수정 포함
 - AS/NZS 3823.4.2:2014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4.2: 공냉식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계절별 성능지표에 대한 시험 및 계산 방법 - 난방기간 에너지 효율 (ISO 16358-2:2013, MOD) - 수정 포함
 - AS/NZS 3823.1.5:2015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5: 단일 배기덕트인 비덕트형(Non-ducted) 이동형 공냉식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 AS/NZS 3823.1.1:2012: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1: 단상 에어컨 및 열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ISO 5151:2010, MOD)
 - AS/NZS 3823.1.2:2012: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시험방법 - 덕트형(Ducted)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ISO 13253:2011, MOD)
 - AS/NZS 3823.1.3:2005: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3 - 수열원 열 펌프- 물-공기 및 염수-공기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ISO 13253:2011, MOD)
 - AS/NZS 3823.1.4:2012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4: 다중 분할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ISO 13256-1, Ed.01 (1998) MOD)

이 표준들 역시 다음의 시험 표준을 대체한다.

- AS/NZS 3823.3:2002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3: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의 성능 계산 요구사항
- AS/NZS 3823.2:2013: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2: 에너지 라벨링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요구사항
- 기존의 에너지등급라벨 대신 지역별 에너지등급라벨(Zoned Energy Rating Label)을 사용하고, 계절별 에너지효율등급을 알린다. (최대 30kW 용량의 제품)
 - 현재 라벨 표시가 요구되는 제품은 (즉: 이중 덕트 이동형 에어컨을 포함한 단상 비덕트 에어컨) 기존의 에너지등급라벨 대신 지역별 에너지등급라벨을 표시해야 한다.
 - 현재 라벨 표시가 요구되지 않는 제품은 (주로 단상 덕트 및 삼상(three-phase) 장치) 라벨을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의 SEER 등급을 에너지등급 웹사이트에 공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용량이 30kW 를 넘는 제품은 라벨을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의 SEER 등급을 에너지등급 웹사이트에 공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물리시험 보고서에 근거한 SEER 열 등급은 수의로 제공할 수 있다).
 - 이동형 에어컨 (단상)은 AS/NZS 3823.1.5:2015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5: 단일 배기덕트인 비덕트 이동형 공냉식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에 따라 검사한 시험 결과가 부착된 지역별 에너지등급라벨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 MEPS 요건 변경(이동형 에어컨)
 - 이중 덕트 장치: 에너지효율(EER)과 성능계수(COP)에 근거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MEPS)을 2.5 수준으로 줄인다. (현재 요구조건에 대해 AS/NZS 3823.2:2013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2: 에너지 라벨링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요건을 참조한다.)
 - 단일 덕트 장치: 이 장치에서도 EER 과 COP 에 근거하여 2.5 수준의 MEPS 를 쓴다. 특히 상업용/산업용 에어컨 용량이 65kW를 넘는 에어컨인 경우, 연간 에너지효율(AEER)과 연간 성능계수(ACOP)에 근거하여 MEPS를 2.9로 한다.
- 기타 변경 사항
 - H2 MEPS 삭제: H2 시험지점인 MEPS 수준을 따로 충족할 필요가 없다.

- 다중-분할 등록: 이미 등록된 다중 실외 장치들로 구성된 시스템은 복합 시스템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 실외 장치 전용 공급품: MEPS 요건은 시스템으로 판매되지 않는 실외 장치 공급품에 적용된다.
- 30kW 미만 제품의 소음 테스트 기준: EN 12102:2013 실내 냉난방용 전동 압축기가 장착된 에어컨, 액체 냉각 패키지, 열 펌프, 제습기. 공기소음 측정. 음력 레벨 측정이 이용될 것이다.
- 소음 등급 시험지점: 정격용량 냉방시험인 경우 T1(35°C) 또는 난방 전용 장치인 경우 H1 (7°C)의 동작점에서 측정
- 소음 시험 요건:
 - 비덕트 분할 시스템: 실내 및 실외 소음 레벨
 - 덕트 장치(분할 장치와 통합 장치 모두): 실외 소음 레벨
 - 비덕트 통합(unitary) 장치 (예: 창/벽): 실내 및 실외 소음 레벨
 - 완전히 (냉난방) 조절된 공간에 놓인 단일 및 이중 덕트 '이동형' 통합 장치: 실내 소음 레벨
 - 다중-분할 시스템: 등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합에 근거를 둔 단일 실외 장치의 실외 소음 레벨
- SEER 저하계수 변경: AS/NZS 3823.4의 저하계수가 기본값 0.25로 고정된다.
- 비가동(non-operative) 전력 측정: MEPS 기준에 대한 비가동 전력(예: 대기)은 AS/NZS 3823.4의 가중평균 소비전력(Pia)으로 바뀐다.
 - H2 및 H3 시험: 공기 엔탈피 시험 또는 실험 열량계 시험은 모든 에어컨에 대한 H2/H3 (2°C/- 7°C) 시험으로 인정된다.
 - 기본 SEER 값 사용: 29°C 냉각시험에서 정속(Fixed speed) 제품들은 기본값을, 변속(variable speed) 제품들은 정속 시험지점을 사용할 수 있다.
 - 30 kW 넘는 제품의 시험결과 인증: 유로벤트(Eurovent), 미국냉난방공조협회(AHRI) 인증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 기준이 사용될 수 있다.
 - 30kW 넘는 제품의 시뮬레이션 시험: 물리시험과 결과가 동일하다고 증명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다.
 - 최대 냉각 시험: 더 이상 라벨이 붙은 제품의 요건이 아니다.
 - 상업용 제품의 등급 분류: 상업용인지 또는 가정용인지를 기준으로 제품의 등급을 나눌 수 있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호주는 1983년 브뤼셀에서 체결된 통일상품 분류에 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in Brussels)에 따라 1988년 1월부터 국제통일 상품 분류제도(H.S. System)를 채택, 운용하고 있다. 관세구조는 크게 표준관세(Standard Tariff)와 양허관세(Concessional), 표준관세는 다시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로 구분된다.

관세율의 경우, 산업구조 개편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여 관련 국가들에는 대부분의 품목에 점진적 무관세를 적용하나, 일반적 기본 관세율은 5% 정도다.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보다 조금 낮은 특별관세를 적용하기도 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일반 관세율은 호주 외무부 홈페이지(<https://www.abf.gov.au>)에 접속해 Importing, exporting and manufacturing 항목 하단의 Tariff classification을 클릭, Current tariff classification의 본문 하단 Schedule3 을 클릭한다. 이후 목록에서 찾고자 하는 HS Code에 해당하는 Chapter 00 - Goods 을 클릭하면 하위 코드별 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호주와의 FTA 체결국으로 일반 관세율과 함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는 FTA 관세율이 적용되며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개설한 FTA 포털(<https://ftaportal.dfat.gov.au/>)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당 포털은 품목에 따른 FTA 체결국들에 대한 양방 관세율 및 수출입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법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1번에 HS Code 또는 제품명을 영어로 기입, 2번에 대호주 수출입 여부를 선택한 후, 3번에 상대국(한국 또는 기타 호주 FTA 체결국)을 지정하여 검색하면 된다. 관세 정보는 HS Code 6자리부터 확인할 수 있다.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통관절차

호주의 수입 통관 절차는 기본적으로 신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지연 등 특별히 까다로운 점은 없으며 소요 시간도 짧은 편이다. 과거에는 목재 포장재에 대한 검역 서류 미비, 항만 노조의 잦은 파업 등이 걸림돌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화물 도착 전 통관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해 수속이 가능하며 세관이나 검역소의 추가 검사 요구를 제외한 모든 화물은 수입 도착 후 바로 수출 상태 그대로 수입자에게 전달된다.

◦ 목록통관

-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소액면세통관이 가능하며 X-ray 검사만으로 간단히 통관되므로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치는 물품에 비해 처리속도가 빠르다.

◦ 일반통관(정식수입신고)

- 호주로의 정식 통관을 위해서는 산업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FTA 관세 혜택 적용 시 필요) 등의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 기존 연 매출 75,000호주달러 미만의 기업은 1,000호주달러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텍스(10% GST)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2018년 7월 1일부 해당 규정이 변경되어, 이후 호주로 수입 및 구매되는 모든 온·오프라인 구매품목에 10% GST가 부과된다.

2) 수입 전 준비사항

◦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세무소(ATO - Australian Taxation Office) 에서 발행되는 번호로 세관 수출입 신고 시 세관 고객 번호(CCID - Customs Client ID)로 자동 전환되며 관세와 함께 지불되는 모든 세금(GST/WET/LCT 등)이 세무소에 기록된다. ABN이 없는 개인 화주 경우에는 개인 기본 신상 기록에 준해 수출입신고 세관 고객 번호를 부여받아 진행된다.

물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서(전문자료) : 정확한 품목 분류 번호(HS Code)로 수입 시 관세 감면 혜택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수입 신고 시 세관 또는 관련 관계 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 허가 여부를 사전 검토해 통관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과 호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호주 FTA 포털을 통해 쉽고 빠르게 품목별 관세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다. (관련 링크 :

<https://ftaportal.dfat.gov.au/>)

◦ 수출자와의 거래 계약서(Offer Sheet/pro-formal invoice)

수입 시 발생하는 비용 산출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함으로써 판매가격 계산 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세관에서 구입단가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거래 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수입물품 검증 및 표기

호주는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에서 관할하는 관세법(Customs Acts), 검역법(Quarantine Acts)에 의거해 수입 통관이 일차

적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수입상품(Imported Goods)에 대해서는 The Commerce(Trade Description) Act 1905, The Commerce(Imports) Regulation 1940에 의해 관리를 받게 되며 이에 필요한 정확한 물품 표기(Trade description)를 요구하고 있다.

- 원산지, 수량, 무게, 크기, 생산자, 내용물 외 일반 구입자에게 필요한 물품에 대한 기본 자료를 영어로 표기돼야 하며, 이 상품 표기는 일반적으로 구입자가 구입 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에 표기돼야 한다.

-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는 저작권과 관련된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 전 변호사 또는 관세사와 사전 수입 판매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다. 저작권 소유자(또는 대행자)는 세관에 소유 상표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수입 통관 시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반입을 불허할 수 있다.

- 음식물의 경우 호주 음식물 기준법에 따라(Food Standards Code) 필요한 라벨 작업이 돼야 하며 호주 음식물 라벨에 표기되는 영양 정보(Nutrition Information)표시 방식은 한국/미국과 달리 유럽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알러지 관련 유의사항 및 정보는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운송제도

호주의 운송 절차는 타국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산화되어 있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해상물류사(선사 및 항공사)는 운송 절차를 전산화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실시간 운송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운송 비용은 해상물류의 경우 20FT(Dry) 컨테이너의 경우 약 2,000 미국달러, 40FT의 경우는 3,000 미국달러 정도 소요되며 항공운송 일 경우 1kg당 약 4 미국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해상 및 항공 운송 비용 외에도 통관 및 내륙 운송 비용 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Hana Express(한국 업체)

주소	9/6-20 Braidwood St. Strathfield South NSW 2136
전화번호	+61-2)9742-5788
이메일	info@hanarods.com
홈페이지	http://hanaexp.com

◦ PNL Global Logistics(한국 업체)

주소	87 Egerton Stree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61-2)9700-1188
이메일	info@pnlglobal.com.au
홈페이지	http://www.pnlglobal.com.au/

◦ Pantos Logistics Australia(한국 업체)

주소	Unit 7, 4 Avenue of The Americas Newington NSW 2127
----	---

전화번호	+61-2)8305-3711
이메일	info@pantos.com
홈페이지	http://www.pantos.com

◦ Qube

주소	Level 27, 45 Clarence Street Sydney NSW 2000
전화번호	+61-2)9080-1900
이메일	logistics@qube.com.au
홈페이지	https://qube.com.au

◦ Linfox

주소	55 English Street, Essendon Fields, VIC 3041
전화번호	+61-3)8340-1000
이메일	customer_enquiries@Linfox.com
홈페이지	http://www.linfox.com

<자료원 : 포워딩 및 통관업체별 홈페이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투자 관련 법규

외국인이 호주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그 승인을 판단하는 법규로 외국인인수합병법이 적용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칙, 정의, 외국인 투자신고, 벌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아래 법령 전문은 <https://www.legislation.gov.au>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

-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외국인인수합병법)
-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s 1989 Foreign Takeovers (Notices) Regulations

아울러 호주에 투자할 경우 투자와 관련된 법규는 아니나 호주 상법상 투자자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음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호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통상 유한회사(Proprietary Company, 주주의 수가 50명 이하인 비상장기업) 형태로 현지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이때 등록조건으로 최소 1인의 대표이사(Director)를 신고하여야 하며 대표 이사 중 최소 1인은 반드시 현지 거주자(Australian resident)일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현지 거주자(Australian resident)란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의미하는데, 이 같은 조건으로 인해 초기 법인 설립 시 반드시 현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파트너로 선임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정보 유출이나 인력 채용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본사의 개설 요원 1명과 현지에서 채용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1인이 공동 대표이사로 등록하게 된다.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제도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FIRB)는 연방정부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의 자문기관으로 투자신청서 심사와 승인 여부에 관여하며 외국인 투자 등록을 관리하고 있다.

3) 외국인투자법 개정 현황

기존에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 등록 대상은 외국인이 호주 내 거주용 부동산이나 농·토지에 투자할 경우 등 투자금액 및 분류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2020년 3월 29일부로 해당 법 개정을 발표함으로써 해당일 이후로 접수되는 모든 외국인 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호주 국익(National interest)에 부합하고 자국민 고용을 촉진하는 투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외국인 투자를 선별해 경제 안보와 내국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로 더욱 중요해진 헬스케어 산업과 제조업 및 정보보안 부문 등의 거래는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FIRB에 회부되는 투자금액: US \$0 이상
- 투자 승인 심사기간: 최장 6개월
- 적용 대상: 모든 '외국인'으로 주거지가 호주가 아닌 개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투자자, 외국인 주주가 20% 이상 상당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신탁관리자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둘 이상의 외국인 주주가 총 40% 이상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 신탁관리자,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투자인센티브

1) 투자 인센티브제도 개요

호주 연방정부 및 주 정부에서는 호주 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 산업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호주무역투자진흥원(Austrade)은 호주 내 무역과 투자 촉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문의할 수 있다. 또한, 각 주 정부는 호주 내 법인 설립 및 사업 확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유망지역과 업종 등을 신규 투자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지역, 산업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각 관할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호주 정부는 Grants and assistance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투자가 및 기업들이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직접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분야로는 신생기업 및 기업 확장, 리서치 등의 특정 활동, 세금 감면, 산업보조 등으로 다양하다. 단, 기간제로 운영되는 인센티브 제도도 많으므로 각 제도의 적용 기간 및 변동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https://www.business.gov.au/Grants-and-Programs> 또는 각 주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연구개발(R&D) 투자에 관한 세금 혜택

호주 연방정부는 R&D 투자에 관한 세금 감면혜택을 2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에 따라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개발 활동도 세금감면 혜택 대상에 적용할 수 있다. 동 혜택은 호주 산업부 산하 AusIndustry와 국세청(ATO)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세금감면 신청 전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연구개발 활동은 반드시 AusIndustry에 등록해야 한다.

○ R&D 관련 비용 세금환급제도: 연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The Research & Development Tax Incentive는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분적으로 상쇄시켜준다. 기업의 규모, 산업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연구개발 세금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기업들 중 연 매출이 2천만 호주달러 이하이며, 소득공제 규제되지 않은 업체는 45%의 환부세가 지원된다. 연 매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인 기업들에게는 40%의 세금면제가 지원되지만, 환급은 불가능하며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다.

3) 외국 투자자에 대한 연방정부 및 주 정부 지원

○ 주요 투자 인센티브(내외국 기업, 업종 구분 없음): 2020년 기준 외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투자 인센티브는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s (VCLP)' 하나만 진행 중이다.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s (VCLP)은 외국인들의 호주 벤처사업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들이 투자를 통해 취득한 이익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단, 외국인 투자자는 호주 내 등록된 법인이거나 호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등록펀드의 규모는 1,000만 호주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제한 및 금지(업종)

1) 자원 부문 투자 규제

○ 광산 채굴권 신청 절차

호주의 광산 채굴에 대한 개발사업 인가 및 허가는 각 주(6개: NSW, VIC, QLD, WA, SA, TAS) 및 NT(Northern Territory: 북호주 행정자치구역)의 에너지 자원부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내용과 적용에 있어 대동소이하다. 광물 탐사를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대부분 해당 주의 에너지 자원부 장관에게 사업 계획, 탐사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 사전 인가(Licence)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 기업이나 단체는 정부 기관지 혹은 지역 일간지를 통해 광물 탐사 작업과 관련해 공표(Public notification)할 의무가 있다.

한편, 탐사 및 발굴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발굴 지역의 지표면 파손 및 변형에 대한 비용 등 보상 비용을 해당 지대의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TAS주와 NT의 경우 일부 비용을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 6개 주와 NT 모두 탐사 발굴 신청 지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NSW주와 VIC 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연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6개 주 모두 광물 개발 유보 라이선스(Retention Licence)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 라이선스는 광물을 발견한 기업 혹은 단체로 하여금 필요 시 개발가치가 있을 때까지 발굴 혹은 채광(採鑛)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유보 라이선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잠재적 가치가 있는 광물이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유보 라이선스의 인가 요건은 위에서 언급된 탐사 신청 절차와 유사하다.

호주 전 지역에서 채광 임대권(Mining Lease)을 신청할 수 있으며 탐사 라이선스 혹은 유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우선권이 주어진다. 퀸즐랜드 주(QLD)의 경우 채광 임대권 신청자는 적절한 사전 보유권(Pre-requisite tenure)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채광 개발 계획에 대한 아웃라인과 세부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주 정부 기관지를 통해 광산 개발 소식을 알리는 태스매니아(TAS)주를 제외한 호주의 전체 주에서는 광산 개발 신청 시 공표의무가 주어진다.

○ 관련 정책 및 법규

호주 자원정책 관련 법규는 각 주의 개별 관할 사안으로서 해당 주의 관련 법규를 1차적으로 적용하나 호주 연방법과의 충돌 발생 시 연방법이 우선 적용된다. 호주 채광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호주(WA: Western Australia) 주의 관련 법규들이 호주의 자원 정책 관련 법규로서 좋은 예시가 되고 있는바, 아래의 5개 법이 적용되고 있다.

- Mining Act 1978(채광법)
-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환경보호법)
- Land Administration Act 1997(토지관리법)
- Native Title Act (NTA) 1993(원주민 토지 보호법)
- Offshore Minerals Act 1994(the OM Act, 역외 광물 자원 보호법)

2) 환경 관련 규제

국가 경제의 상당부분이 관광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에서 환경 보호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은 물론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중요 사안이다. 호주 정부의 환경 정책은 채광과 원전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한 감정(Assessment)과 방지 그리고 훼손된 지역의 환경 재활 프로그램을 관할하고 있다. 각 주의 주 정부들은 연방 정부와의 공조 아래 호주 관광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의 각 주(State) 및 행정자치구역(Territory) 정부들은 역내는 물론이고 해안 기선(Baseline)으로부터 3해리까지의 해수역에 있어 광물 자원 관리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우선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환경 파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호주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법규로 하기 2개 법이 있다.

-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the EPBC Act; 환경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존법)
- Petroleum (Submerged Lands) Act 1967 (PSLA, 석유 및 침수지 보호법)

3) 광업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세제상 규제

호주에는 현재 자원산업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통일된 세제는 없으므로 연방정부의 일반 세제 법규(Government taxation legislation) 및 주별 광산업 관련 세제(State mining taxation)를 혼용해 광물 및 에너지 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호주의 광산업 및 석유 산업 관련 법인세는 일반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30%의 법인세율(Corporate rate)이 일괄 적용되고 있다(단, 매출액이 2백만 호주달러 이하인 기업은 28.5% 적용). 고용주에게는 일반업체와 마찬가지로 지급 급여세(Payroll tax),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 변동세율 적용) 그리고 부가 급여세(Fringe Benefits Tax: FBT)가 부과된다. 아울러 호주 내 수입되는 전체 상품에 대해 10%의 부가세(Goods & Services Tax: GST)가 징수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개요

호주는 넓은 국토 면적 대비 인구의 수가 적고 5~6개의 대도시에서 분산 집중된 특성상 대부분의 산업 공단은 대도시 주변으로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다. 이러한 산업 공단들은 호주연방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것이 없으며, 주로 주(State) 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성된 것이며, 그중 일부는 민간개발업체에 의하여 조성되었다. 각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의 개발 및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로 산업 공단을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현재 호주 내에는 다수의 산업공단이 있으며 그 가운데 테크놀로지 공단(Technology and Research Park)과 일반 단지(Industrial Park)로 나뉘어 존재하고 있다. 이들 공단은 전문적인 제조업에 치중돼 있다기보다는 비즈니스 파크의 개념으로 일반 사무용 오피스 건물 이 주를 이루며 몇몇 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 개발 목적상의 산업 밀집 개발 지역의 성격이 짙다.

호주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공단의 형태는 Technology and Research Park이다. 일반적으로 산학 협동을 통한 기술 개발을 위해 대학 구 내 또는 주변에 위치하며, 대부분 주 정부와 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다. 공단 입주 업체들에 지방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직접 금액지원 등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다.

2) 기술산업단지(Technology and Research Park)

많은 지역에 크고 작은 다양한 Technology and Research Park들이 존재하고 있다. Technology Park는 대학교나 리서치센터 등의 시설과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이전, 정보공유, 및 사업발전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되며 더 나아가 호주와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 크고 작은 다양한 Technology and Research Park들이 존재하고 있다.

Technology Park는 대학교나 리서치센터 등의 시설과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이전, 정보공유, 및 사업발전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되며 더 나아가 호주와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Australian Technology Park(ATP)

- 시드니 근교에 위치한 대표적인 기술산업단지
- 입주 절차 및 조건
 - 평가 기준 통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윤 창출 가능성과 지적 재산의 가치 등을 심사하며, 사업 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3개월간 Pre Incubator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재정 능력: 2년간 임차료 이외에 10,000호주달러(6,000 미국달러 정도)의 경비가 소요됨
- 입주 시 비용
 - 임차료: m²당 연간 520호주달러
 - 면적: 초기 단계 시 3.5m², 중기 60m², 말기 125m²
- 입주 시 혜택
 - 일반 Business Incubator 시설에 입주하는 것보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Austrade(국영 무역진흥기관)와 AusIndustry(호주 연방 공업청)에서 제공하는 기술연구 개발비를 지원받기가 쉬워짐

- 최고 2년 동안 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대학의 주요 연구 분야 내에 들면 연구보고 (인력,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산업단지

○ 오스트레일리안 테크놀로지 파크(Australian Technology Park)

규모	13.9ha
위치	Locomotive St, Eveleigh NSW 2015
임차료	평방미터당 약 520호주달러/연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61-2-8275-1032 ○ 담당자: Emily Dickson ○ 홈페이지: https://atp.mirvac.com

○ 캔버라 테크놀로지 파크(Canberra Technology Park)

규모	5.8ha
위치	49 Phillip Avenue, Watson ACT 2602
임차료	미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61-2-6162-5100 ○ 이메일: management@canberratechpark.com ○ 홈페이지: https://canberratechpark.com.au

○ 테크놀로지 파크 아들레이드(Technology Park Adelaide)

규모	3.5ha
위치	Mawson Lakes Blvd, Mawson Lakes SA 5095
임차료	미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61-8-8260-8111 ○ 이메일: julie.bria@sa.gov.au ○ 홈페이지: https://techpark.sa.gov.au

○ 노웨스트 비즈니스 파크(Norwest Business Park)

규모	377 ha
위치	402/5 Celebration Drive, Norwest Business Park, Bella Vista NSW 2153
임차료	미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61-2-8824-9821 ○ 이메일: www.norwestassociation.com.au/contact-us/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 홈페이지: http://www.norwestassociation.com.au

○ 메리필드 비즈니스 파크(Merrifield Business Park)

규모	330ha
위치	Polaris Road, Mickleham VIC 3064
임차료	미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61-3-8681-2200 ○ 이메일: daniel.desanctis@cbre.com.au ○ 홈페이지: http://merrifieldbusinesspark.com.au/

〈자료원 : 산업단지 별 홈페이지〉

주요 지역별 여건

○ 퀸즐랜드(Queensland, QLD) 주

- 면적: 1,852,642km²
- 인구: 509만 명
- 주도: 브리즈번(Brisbane)
- 주요 기관: 퀸즐랜드 주정부
- 주요 산업: 관광산업, 농수산물 수출 등
- 비고: 퀸즐랜드 주는 기업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으로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단위의 투자 유치 기구가 다수 활동하고 있다. 브리즈번을 포함한 남동 지역이 투자 유치 활동에 가장 활발하며 브리즈번 시(Brisbane City Council)이 운영하는 Choose Brisbane이 기업 유치 활동을 담당한다. Choose Brisbane은 안정적인 정치환경 및 경제환경, 빠른 인구성장, 다수의 민간,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우호적인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등을 내세우며 투자유치에 활발히 활동 중이다. 또한 ITQ(Trade and Investment Queensland)는 퀸즐랜드정부의 무역투자 촉진 업무를 담당하며 전 세계 15개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 서호주(Western Australia, WA) 주

- 면적: 2,645,615km²
- 인구: 262만 명
- 주도: 퍼스(Perth)
- 주요 기관: 서호주 주정부
- 주요 산업: 광산업, 기계, 철강 및 운송기기 산업
- 비고: 2009년 이후 세계적인 지하자원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서호주 주의 투자 기회 및 투자 대상 지역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2013년 이후 자원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지하자원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서호주 지역에 대한 투자 환경은 긍정적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원 및 에너지 원자재 투자 및 생산량의 급증으로 서호주는 광업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글로벌 기업들의 목적지가 될 전망이다. 철광석 생산이 확장되며 관련 장비,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이 지원되고 있다. 원격제어 채굴과 같은 새로운 광업기술이 서호주에서 시험되고 있다.

서호주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어 있어 인력조달이 어려워 만성적인 기술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State Migration Centre가 2006년 설치되어 해외로부터의 기술 인력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NSW) 주

- 면적: 809,444km²
- 인구: 808만 명
- 주도: 시드니(Sydney)
- 주요 기관: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 호주무역투자진흥공사, 관세청, 증권투자위원회, 증권거래소, 호주연방법원 등
- 주요 산업: 양모, 쇠고기, 곡물, 설탕, 낙농식품, 각종 과일
- 비고: 해마다 다수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23년간 꾸준한 경제성장을 보여왔으며, 호주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 음식, 정보통신기술, 제조 등 다양한 산업을 포용하여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주둔하고 있으며, 빅토리아 주와 같이 매우 높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다. 투자유치 담당 기관은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 산하의 Invest in NSW가 맡아 활동하고 있다. NSW 주 정부는 2020년 현재 약 80억 호주달러의 인프라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는 서부 시드니 공항에 글로벌 비즈니스 게이트웨이이자 첨단지구인 Western Sydney Aerotropolis 건설 프로젝트이다.

○ 노던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NT)주

- 면적: 1,420,970km²
- 인구: 24만 명

- 주도: 다윈(Darwin)
- 주요 기관: 노던 테리토리 주 정부
- 주요 산업: 양모, 쇠고기, 곡물, 설탕, 낙농식품, 각종 과실
- 비교: 호주 Northern Territory는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강수량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농산물 생산에 최적화된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호주 정부가 농업 분야를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데 미개발 토지가 많은 호주 북부 NT 주는 외국인 투자자가 비교적 수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호주의 폐쇄적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NT 주와 같은 인구 저밀도 지역은 농업종사 직업군(Farmer)의 이민 기회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29,580.27	48,294.32	45,303.35	68,047.91	36,156.16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9,337.46	2,267.3	5,932.12	6,362.03	5,397.25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8	144	30	303,412	160	473,391
2019	115	31	871,179	155	776,718
2020	64	15	384,738	94	385,32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3	1	2,056	4	2,183
광업	24	0	51,047	53	239,696
제조업	22	3	102,059	31	86,25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9	1	18,865	10	18,733
건설업	2	0	5,342	2	5,342
도매 및 소매업	20	12	6,829	23	6,414
운수 및 창고업	1	1	7,751	5	8,649
숙박 및 음식점업	3	3	958	3	731
정보통신업	2	1	791	4	898
금융 및 보험업	51	4	104,298	14	100,431
부동산업	2	2	1,805	6	3,15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2	188	4	7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1	0	1,423	1	82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22	0	76,747	43	225,531
제조업	27	8	74,161	40	65,834
건설업	2	0	19,661	1	5,758
도매 및 소매업	13	1	5,261	13	5,068
운수 및 창고업	3	1	5,112	5	5,923
숙박 및 음식점업	1	0	0	2	213
정보통신업	2	2	67	2	67
금융 및 보험업	20	6	455,635	16	245,167
부동산업	4	2	29,667	7	22,29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	10	198,392	21	194,49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	1	6,199	3	6,09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0	277	2	27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18	1	87,160	26	86,616
제조업	12	3	198,616	21	193,99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0	6,345	0	0
건설업	0	0	0	2	9,260
도매 및 소매업	5	1	4,251	5	2,320
운수 및 창고업	0	0	0	2	1,924
숙박 및 음식점업	4	1	80	4	81

정보통신업	1	0	65	1	65
금융 및 보험업	3	0	3,080	3	3,080
부동산업	7	4	72,425	9	82,45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4	12,583	15	5,40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	1	11	5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0	122	1	122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GS건설호주법인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광업 및 자원개발
취급분야	건설업
모기업명	GS건설㈜

○ GS글로벌호주법인

진출연도	198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철강판재류, 석유화학, 석탄
모기업명	GS글로벌㈜

○ KEB하나은행시드니지점

진출연도	1986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취급분야	은행업

모기업명	KEB하나은행(주)
------	------------

◦ LG상사호주법인

진출연도	198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및 자원개발
취급분야	석탄광산 투자, 석탄 생산물 해외판매
모기업명	LG상사(주)

◦ LG전자(주)호주법인

진출연도	198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가전제품
모기업명	LG전자(주)

◦ LS전선호주지사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한국 제품의 호주 직판 혹은 대행 판매, 관련 매매 거래의 서비스 제공
모기업명	LS전선(주)

◦ SK네트웍스호주자원법인

진출연도	199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및 자원개발
취급분야	석탄광산 투자
모기업명	SK네트웍스(주)

◦ 금호타이어

진출연도	1976
------	------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용 타이어
모기업명	금호타이어(주)

○ 기아자동차호주판매법인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판매 및 서비스
모기업명	기아자동차(주)

○ 넥센타이어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용 신차 타이어
모기업명	넥센타이어(주)

○ 농심호주법인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식품
모기업명	농심(주)

○ 대한전선호주법인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EHV 및 MV/LV 케이블, 엔지니어링 및 설치 서비스

모기업명	대한전선(주)
------	---------

○ 대한항공(주)시드니지점

진출연도	1990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항공운수업
모기업명	대한항공(주)

○ 모트렉스호주법인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모기업명	모트렉스

○ 바텍글로벌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치과용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기
모기업명	바텍글로벌(주)

○ 삼성물산건설부문호주지점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 및 공사업
취급분야	건설 프로젝트
모기업명	삼성물산(주)

○ 삼성물산상사부분

진출연도	2011
------	------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무역업 (화학, 철강, 섬유 등)
모기업명	삼성물산(주)

○ 삼성전자(주)호주법인

진출연도	198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삼성전자(주)

○ 신한은행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취급분야	금융 서비스
모기업명	신한은행

○ 아시아나항공시드니지점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항공운수
모기업명	아시아나항공(주)

○ 오스템호주법인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치과 의료 기기

모기업명	오스템임플란트(주)
------	------------

○ 우리은행시드니지점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취급분야	금융서비스
모기업명	우리은행(주)

○ 이노션월드와이드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광고 마케팅
모기업명	이노션월드와이드(주)

○ 포스코인터네셔널

진출연도	1968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석탄, 철광석, 스크랩 및 철강제품, 화학제품, 기계류 및 비철금속, 곡물 수출입
모기업명	포스코인터네셔널(주)

○ 포스코호주

진출연도	198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광업 및 자원개발
취급분야	철강/비철강원료 투자자산 관리, POSCO 및 계열사 철강제품 수입 및 오세아니아 시장판매
모기업명	포스코(주)

○ 한국관광공사시드니지사

진출연도	1979
------	------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기타
취급분야	관광 홍보
모기업명	한국관광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호주법인

진출연도	199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및 자원개발
취급분야	호주 내 유연탄 프로젝트 운영 및 투자를 통한 발전용 유연탄 생산
모기업명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산업은행시드니사무소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취급분야	은행업
모기업명	한국산업은행

○ 한국전력공사호주현지법인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및 자원개발
취급분야	발전용 유연탄 (생산전)
모기업명	한국전력공사

○ 한국중부발전호주법인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및 자원개발
취급분야	발전용 석탄

모기업명	한국중부발전
------	--------

○ 한국타이어오스트레일리아

진출연도	198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한국타이어(주)

○ 현대모비스호주법인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호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및 현대자동차 대리점 AS 부품
모기업명	현대자동차그룹

○ 현대상선호주법인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해운업
모기업명	현대상선(주)

○ 현대자동차(주)호주판매법인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자동차
모기업명	현대자동차(주)

○ 현대종합상사호주법인

진출연도	1980
------	------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한국 제품의 호주 직판 혹은 대행 판매, 관련 매매 거래의 서비스 제공
모기업명	현대중합상사(주)

○ CJ 뉴트라콘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제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설탕 제조업
모기업명	CJ제일제당

○ 한화디펜스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제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무기제조
모기업명	한화(주)

○ 일진호주

진출연도	200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샤시 제조 및 베어링
모기업명	일진글로벌(주)

○ 포스코건설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광업·자원개발
취급분야	건설공사, 시설설계 및 시공

모기업명	포스코(주)
------	--------

○ 팬오션멜버른사무소

진출연도	1984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해운운수
모기업명	팬오션(주)

○ 썬메탈코퍼레이션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자원개발
취급분야	자원개발
모기업명	고려아연

○ 슈퍼퍼트동부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비료
모기업명	동부팜한농

○ 대구텍호주법인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절삭공구
모기업명	대구텍(주)

○ 현대제철

진출연도	2018
------	------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
모기업명	현대제철㈜

○ YG-1호주법인

진출연도	200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철삭공구
모기업명	와이지원㈜

○ 종근당바이오 호주법인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건강기능식품
취급분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모기업명	종근당바이오㈜

〈자료원 : KOTRA 시드니 무역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현지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초기에 세무상 여러 장점이 있으며, 초기 투자 이후 사업체에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법인세 (30% 또는 27.5%)를 납부한 이후에 지급되는 배당금은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 이런 이유로 많은 외국 기업이 호주 현지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해 진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인원 중 현지 영주권자 이상의 이사진은 보통 법인 설립 대행업체에서 지원하므로 외국인이 참여 불가능한 기업 설립 형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현지법인

현지 법인은 'Pty Limited'로 표시하게 되며, 호주의 회사 등록 기관인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에 등록된다. 등록 완료 시 ACN(Australian Company Number)을 부여받게 되며, 회사와 관련해 등록된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일 년에 한 번씩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영업 이익 발생 시 법인세율인 30%를 호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며, 5,000만 호주달러 미만의 기업은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돼 법인세 27.5%를 납부한다. 순이익을 한국 본사로 배당금 형식으로 보낼 경우 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이 없다. 그러나 세금 공제 전 배당금일 경우 배당금의 15%를 호주 국세청에 원천 징수세 (Withholding Tax)로 내야 한다. 한국으로 이익금 전부를 송금할 수 있으며 상한선은 없다.

Pty Limited는 호주상법(Corporations Act)상 비상장법인을 의미하며 회사 설립 시 기본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대표 (Director)는 1인 이상 반드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주주는 법인 및 개인 모두 가능함.
- 최소자본금 1호주달러 이상(1주도 가능)

2) 외국 법인

외국 법인의 설립 역시 현지 법인과 마찬가지로 연회비 지불 및 회사 등록 내용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 실제 사업형태는 현지법인과 유사하나 구분상 지사(외국 법인)의 형태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현지 법인과 동일한 절차와 의무를 가진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시 호주 회사 주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호주에 등록된 외국 법인은 호주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호주 내에서 이익의 30%(연매출액 5,000만 호주달러 미만, 법인세 27.5%)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현지법인과 동일하다.

2020년 12월 기준, ASIC 비용은 아래와 같다.

- 등록 시(ARBN 신청) : 506호주달러
- 매년(Annual Review Fee) : 273호주달러(Pty Ltd), 1,267호주달러(지점)

지사

호주의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의 지점(Branch)의 형태로 호주에 진출할 경우, 외국 법인(Foreign Registered Company)으로 분류되게 된다. 법인의 등록도 위의 현지 법인과 마찬가지로 회사 등록 내용 변경 신고 및 연회비 지불의 의무가 있다. 이 경우 ACN(Australian Company Number)을 대신하여 ARBN(Australian Registered Body Number)을 신청하여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후로는 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외국 법인이 호주 내 지점을 설립할 경우, 본사는 호주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므로, 본사의 현재 이사진(개인 신상)과 주주명부 및 회사 정관, 등기부 등본 등이 필요하며, ASIC에 제출 시 위의 서류를 모두 번역, 공증(Notary Public)하여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현지에 있는 영주권자 이상인 사람을 반드시 Local Agent로 임명하여 ASIC에 회사 변경사항(주주, 이사 등) 신고 및 제출의 의무를 호주 현지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인이 아닌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한국 서류의 영문 번역 및 공증 그리고 서류검토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시간이 더 소요되며, 비용도 법인(Pty Ltd) 설립의 경우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

연락사무소

호주 내 상법상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등록 규정이 없으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영업 활동을 도우며 그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들만 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부가가치세(GST)신고 및 직원 급여의 원천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공개 법인으로 주식의 공모가 원칙이며 발행된 주식은 증권 거래소에 등록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호주 거주자 2명 포함 적어도 3명의 임원 및 1명의 호주 거주인 자격이 있는 총무를 두어야 한다. 무한책임회사와 보증책임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회사명에 항상 'Limited' 혹은 'Ltd'라는 명칭을 포함해야 하고 재무제표의 공개의무, 감사 등 비공개 회사보다 많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유한책임회사

우리나라 상법상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비공개 법인으로 주식, 사채 및 기타 증권의 공모가 금지된다. 이 경우 직원이 아닌 주주가 50명을 넘어서는 안 되며 최소한 1명의 총 책임자 등록 및 1명의 호주 거주인 자격이 있는 임원을 두어야 한다. 회사명에 항상 'Proprietary' 혹은 'Pty'를 붙여야 하고 현금 또는 기타의 대가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사모 방식의 주식 및 담보 부기채 발행이 가능하다. 재무제표는 세무 신고서를 제외하고는 공표의 의무는 없다. 매해 비공개회사는 '소규모' 혹은 '대형' 비공개회사로 구분되는데 아래의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시킬 때만 '소규모'로 분류된다.

- 회계연도 회사 소득이 5,000만 호주달러 이하
- 회계연도 회사 자산이 2,000만 호주달러 이하
- 회계연도 회사 직원 수가 50명 이하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즉, Sole trader는 개인이 사업체가 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형태이다. 개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Australian Taxation Office(호주국세청, 이하 "ATO")에서 Australian Business Number(사업자등록번호, 이하 "ABN")를 부여받아야 한다. 사업 소득은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되며, 사업주는 근로소득 등 여타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사업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개인사업자로 사업 운영 시 장점은 사업 설립비용과 관리,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사업손실 발생 시 사업 손실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상계가 가능하다. 또한, 법인 전환 시 사업 이전에서 오는 양도소득이 법인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계산 시 50%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더하여 사업 관련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에 대해 Small business concession(소규모 사업자에 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 이하 "SBC")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사업자로 사업 운영 시 단점은 사업상 발생하는 법적 책임, 부채 및 사업손실이 사업주 개인에게 전가되며,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 수

준에 따라 최고 45%의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사업손실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공제 시, Non-commercial Loss Test(비소득 손실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 Calibre Business Advisory

전화번호	+61-2-9261-2177
주소	Level 15/309 Kent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calibreba.com.au
이메일	jamie.lee@calibreba.com.au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이준목 회계사(Lee, Jun Mok), 김용진 회계사(Kim, Yong Jin))

◦ Private Advisory Group

전화번호	+61-2-8386-8733
주소	1/35 West Parade Eastwood NSW 2112
홈페이지	http://www.privateca.com
이메일	eric.kang@privateca.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강민우 회계사(Kang, Min Woo))

◦ H and H Lawyers

전화번호	+61-2-9233-1411
주소	Level 5, 32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hhlaw.com.au
이메일	ken.hong@hhlaw.com.au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홍경일(Hong, Kyung Il), 김현태 변호사(Kim, Hyun Tae))
비고	노동법 등 전문 법무법인

◦ The Hills Legal House

전화번호	+61-414-070-657
주소	U277, 398 Pitt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s://ko-kr.facebook.com/thehillslegal.com.au/

이메일	law@seongminlee.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이성민 변호사(Lee, Seong Min))

◦ Moore Australia

전화번호	+61-2-8377-9000
주소	Level 7, 9 Castlereagh st Sydney NSW2000
홈페이지	https://www.moore-australia.com.au/
이메일	jyu@Moorestephens.com.au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유형석 변호사(Yu, Hyung Suk))

◦ Wentworth Lawyers and Partners

전화번호	+61-1300-577-502
주소	L13, 2 Park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wwlp.com.au
이메일	johnpark@wwlp.com.au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박정호 변호사(Park, Jeong Ho), 이소정 변호사(Lee, So Jeong))

◦ EY(Ernest and Young)

전화번호	+61-2-9276-9815
주소	200 george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s://www.ey.com/en_gl
이메일	simon.yoo@au.ey.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유훈 전무, 아시아총괄 회계사(Simon Yoo))
비고	4대 메이저 회계 및 컨설팅사

◦ Holing Redlich

전화번호	+61-428-505-264
주소	Level 65 MLC Center, 19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holdingredlich.com
이메일	dr.christineoh@gmai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크리스틴 오, 한국기업 전문 변호사(Christine Oh))
비고	시드니 10대 종합 법무법인

○ PKF Brisbane

전화번호	+61-7-3839-9733
주소	Level 6, 10 Eagle St Brisbane QLD 4000
홈페이지	https://www.pkf.com.au
이메일	ryan.kim@pkf.com.au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김상현(Kim, Sang Hyun))
비고	브리즈번 지역 메이저 회계 및 컨설팅

○ Findex

전화번호	+61-2-9262-2155
주소	Level 15, 1 O'Connell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s://www.findex.com.au/office/sydney
이메일	christine.park@findex.com.au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박희숙(Park, Hee Suk))

<자료원 : 회계 및 법무법인별 홈페이지, KOTRA 시드니 무역관 보유 자료>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청산

○ 청산 종류

- 임의 청산: 채무자의 요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참가한 투표를 통해 청산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 법정청산/강제청산: 주로 채권자나 주주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청산절차이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서 공식적 청산을 명령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청산자는 법원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 청산 절차

- 투표 혹은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되며 임명된 청산자는 채권자 회의를 소집하여 채권자의 의견 및 상황을 파악하며 청산자의 비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된다. 청산 비용은 회사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4,000~8,000호주달러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며, 청산 시 지급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 청산절차에 드는 비용 및 청산자의 급여
- 미지급 급여 및 연금 계산
-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연차 급여 계산
- 근로자 해고에 따른 비용
- 무담보 채권

- 청산자는 항목에 따라 자산을 처분 혹은 사업 운영수익을 배분해야 하며 영업종결,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가 마무리되면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청산이 종결된다. 한편, 통상 청산 기간은 7주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2) 철수

○ 투자법인 철수 신청 조건

- 투자법인의 철수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회사 구성원의 결정에 의해서
-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 회사의 자산이 1,000호주달러 미만일 경우
- 회사가 아래와 같은 항목의 채무가 없을 경우
- 연차휴가
- 장기 근속휴가
- 기타 수당
- 퇴직금
- 급여
- 회사가 어느 소송에도 연루되지 않았을 때
- Corporations ACT 2001 에 따른 비용 및 벌금 등을 모두 납부하였을 경우

○ 투자법인 철수 신청 방법

- 투자법인 철수는 철수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경우 온라인 또는 서류의 우편 송부로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 <https://asic.gov.au/online-services/company-officeholders/>
- 우편 신청: 회사 Application for voluntary deregistration of a company (FORM6010)를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PO Box 4000 / Gippsland Mail Centre VIC 3841

○ 투자법인 철수 비용

- 2020년 12월 기준 42호주달러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1.36호주달러(2020년 11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852.18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354.6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4.56
비고	○ 2020년 최저임금 전년대비 1.75% 인상, 2020년 7월부터 시간당 19.84호주달러 적용 * 2020년 11월 25일자 미국달러(1USD=1.36AUD)로 환산하여 적용 ○ 대졸 사무직 초임 : 월급 5,250호주달러 * 2020년 11월 25일자 미국달러(1USD=1.36AUD)로 환산하여 적용 ○ 고졸 생산직 초임 : 월급 3,209호주달러 * 2020년 11월 25일자 미국달러(1USD=1.36AUD)로 환산하여 적용				

〈자료원 : Glassdoor, Indeed, Salary Expert〉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고용 계약은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구도 또는 서면을 통하여 양측 합의하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계약 형태는 풀타임(Full-time : 지속적 고용 계약. 평균적으로 약 38시간/주 근무), 파트타임(Part-time : 매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 근무. 38시간 미만 근무. Full-time 고용인과 동일한 혜택(단, 시간 비례 적용)), 캐주얼(불규칙적 근무시간, 근무 보장 시간 없음. 휴가 미적용. 계약서상 명시된 조항 없을시 자유롭게 계약 파기 가능)로 구분될 수 있다. 호주 국가고용기준(NES :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따라 계약서에는 공정근로법에 규정된 10개 항목의 최소 고용기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일주일 최대 근무 시간
- 자유 근무시간 협정 요구
- 출산 휴직 및 육아 관련 권리
- 연차 휴가
- 개인 휴가(병가 및 보호자 휴가) & 사별 휴가
- 지역사회 봉사휴가
- 장기근속휴가
- 공휴일
- 해고 공지 및 퇴사 급여
- 공정 근로 선언문 조항(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근로시간

호주 노동법상 근로자의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은 주 38시간으로 근로자가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일을 하거나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의한 시간 이외에 근무한 시간은 추가근무(Overtime)로 간주된다. 노무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고용주는 합당한 근거(reasonable overtime)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근로자에게 추가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추가근무 수당은 산업별, 직종별로 상이하나, 보통 평일 근무시간 이후 첫 3시간은 시급의 1.5배, 첫 3시간 이후는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주말근무 시 기본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추가근무를 직종별 추가근무 수당 상세 정보는 해당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airwork.gov.au/pay/penalty-rates-and->

allowances/overtime-pay)

휴가

연 4주(근무일 기준 20일)의 연차 휴가, 병가(Sick leave, 연 10일), 1개 고용주 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2달의 장기 근속 휴가(Long service leave) 등이 있다. 주에 따라서 경조사 휴가(Bereavement Leave) 등을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기도 하다.

1994.3.31부터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남자에게도 자녀 출산 시 52주의 무급 휴가를 (원할 경우) 줄 수 있게 돼 있다. 12개월 이상의 연속 근무를 마친 모든 고용인은 출산/육아휴직(Maternity or Adoption leave)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는 고용인이 자녀를 출산했거나 고용인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그리고 고용인이 16세 이하의 아이를 입양했을 경우 NSW주 기준 18주의 유급휴가(Paid parental leave) 및 최대 24개월의 무급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다.

해고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전 통보를 해주어야 하며 해고 통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해고통보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효력을 갖게 됨
- 해고통보는 근로자의 근무 종료일에 효력을 잃음

근로자가 위법 행위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고용주는 근로시간 또는 연차 등에 해당하는 모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위법 행위란 아래와 같은 행위들을 포함한다.

- 타인 건강 및 안전 또는 고용주의 사업의 평판과 이익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경우
-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행위를 고의적으로 할 경우
- 도둑질, 사기, 폭력, 업무에 관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지시에 대한 불이행 등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아래와 같은 최소 통보 기간을 주어야 한다.

- 근속연수 1년 미만: 1주
- 근속연수 1-3년: 2주
- 근속연수 3-5년: 3주
- 근속연수 5년 초과: 4주

한편, 근로자의 나이가 45세 이상임과 동시에 고용주와 함께 근무한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일 경우, 평균 해고 통보 기간에 추가로 일주일 을 가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퇴직금

퇴직금이란 근로자의 근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불해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퇴직금은 산업별 단체 협약, 기업 협정이나 어떠한 등기 협정서에 상이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근무 종료일 또는 다음 월급 예정일에 지급되어야 한다.

- 퇴직금 지급: 근로자의 퇴직금에는 추가근무수당 및 공제액을 포함하여 미지불된 근무 시간 수당, 축적된 연차(연차수당, 할당된 장기 근속휴가 수당, 퇴직 수당)가 포함되어야 함

- 정리해고 수당 및 재정 지원 혜택: 근로자가 정리해고를 당할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정리해고 수당을 지급. 정리해고 수당은 소기업 및 캐주얼 고용인 등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호주 공공 건강보험 제도인 매디케어(Medicare)는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건강보험위원회가 그 비용의 85%를 상환하도록 하거나 의사가 직접 벌크-빌링(bulk-billing: 정부가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의 차액을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병원에서 환자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매디케어는 매년 회계연도에 이루어지는 텍스리턴 시 매디케어 레비라는 항목으로 개인의 연 수입의 2%를 정부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고용보험

호주는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은 고용보험 아닌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조세제도를 통해서 운영되는 사회보장급여에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의 사회보험제도는 호주연방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사회복지 급부제도로 호주정부가구인 센터링크(Centrelink)에 의해 관리된다.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크게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12개월 미만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수당(Job Search Allowance; JSA)과 12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뉴스타트 수당(NEWSTART Allowance; NSA)이다. 첫 12개월 실직 기간에 구직수당 수령자에게는 구직지원이 제공된다. 그러나 12개월 이후에는 구직수당에서 뉴스타트 수당 수령자로 자동으로 이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실업자가 뉴스타트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여야 한다.

산재보험

산재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근무현장에서 부상을 당했거나 업무로 인해 병에 걸렸을 경우 적용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무지에서의 부상이나 업무로 인한 병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수당과 의료비용 및 재활비용을 커버한다. 호주의 경우 산재는 해당 주(지역)법을 준수하고 있다.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가입이 고용주의 법정 의무사항이다.

국민연금

고용주는 한 달에 450 호주달러(세금 전) 이상의 임금을 받는 18세 이상 또는 18세 이하지만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금(월급의 9.5%)을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연금 보장이라 하며 모든 정규직(Full-time, Part-time)과 일부 캐주얼 근로자에 적용된다. 연금은 고용인의 지정연금 계좌에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지불되어야 한다. 호주는 연금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고령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은퇴를 앞둔 퇴직자들은 적어도 100,000호주달러 많게는 500,000호주달러 이상 적립한 경우도 흔하므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연금에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호주의 법인세율은 2020년 7월 기준, 일반 기업대상 30%, 중소기업 대상 26%이며 중소기업 법인세율이 작년대비 1% 낮아졌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연 매출 5천만 호주달러 미만의 기업으로 이 기준은 2018/19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2020/21년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에서 다음 회계연도 2021/22년에는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26%의 법인세를 다시 25%로 인하 계획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노력이다. 한편, 표준 법인세율을 비교할 때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으로, 재계에서는 끊임없이 법인세율 인하 주장을 제기해 온 바 있다.

개인소득세

호주는 개인소득세율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호주의 주요 세수원이다.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 2019/20 에 따라 기존 연소득 18,201~37,000 호주달러이던 과세구간은 2020/21 신규 예산안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연소득 18,201~45,000 호주달러까지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세금 구간이 상향조정 되었다. 연소득 18,200 호주달러 까지의 구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세금이 없고 18,201~45,000 호주달러 구간은 19%, 45,001~120,000 호주달러까지는 32.5%의 소득세가 매겨지고 있다. 또한, 120,001~180,000 호주달러 구간에는 37%, 180,001 호주달러 이상에는 45%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2020/21 연방 예산안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금 감면안은 2022년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7월부터로 2년 앞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30여년 만의 경기불황을 맞이한 호주 정부가 개인 세금 감면을 통해 가계 소득 증가 및 소비 부양을 기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신규 예산안에 따른 조정으로 연 급여 45,000 호주달러 미만의 납세자들은 최대 700 호주달러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연소득 45,001~90,000 호주달러까지의 사람들에게는 최소 700 호주달러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80 호주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90,000~120,000 호주 달러 이상의 소득자는 최대 2,565 호주 달러의 세금 감면을 얻게 되고 120,000~180,000 에서는 2,565~0 호주달러까지의 세금 경감을 받게 되며 최대 구간인 연소득 180,000 호주달러 이상의 납세자들은 이번 예산안을 통한 추가적 세금 감면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감세 계획의 마지막 단계로 2024년 7월부터 37% 세율 폐지, \$45,000부터 \$200,000 사이 소득자에게는 일률적으로 30%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내용도 앞당겨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가가치세

호주의 부가가치세 GST(Goods and Services Tax)는 일부 기초 생필품을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 등 모든 소비 활동에 적용되는 세제로 10%의 단일 세율이며, GST세제 도입으로 연방정부 관할 간접세인 도매 판매세(Wholesale sales tax)와 주 정부에서 부과하는 FID, Debit tax, 인지세(Stamp Duty) 등 간접세는 폐지되었다. GST는 영세율 대상(GST FREE)과 면세 대상(Input Taxed)을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의 소비 행위에 부과된다. 그러나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하는 사업자(Enterprise)는 GST를 환급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GST의 부담이 없다.

특별소비세

호주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유류 및 주류, 담배, 럭셔리 자동차에 등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특별 소비세는 종량세 방식인 상품의 수량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1) 연방준비 은행법

호주의 외환관리기구인 중앙은행인 준비은행(The Reserve Bank of Australia)으로 중앙은행이 통화 발행 및 금융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외환 정책도 수립, 집행하고 있다. 1959년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외환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경제 성장 및 금융 시스템의 발달로 금융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면서 1959년 연방준비은행법(The Reserve Bank Act 1959)을 제정하여 준비은행이 외환도 관리하게 됐다.

호주는 1983년 12월부터 외환 관리를 종전 통제 위주에서 점차 완화하여 환율 문제뿐만 아니라 신용장 개설, 해외 투자 및 송금 등 전 분야에 걸쳐 외환 관리를 대폭 자유화했으며, 현재는 외국 정부 및 외국 기관과 외국 은행의 대외 투자와 호주 통화의 해외 반출 및 세무 목적 이외에는 외환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 세무 목적상 보고해야 할 외환 현금 거래 대상
- 관련 법규: Financial Transaction Report Act 1988
- 보고 기관: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 and Analysis Centre (AUSTRAC)
- 보고 대상: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 거래 업체 및 귀금속 취급 업체가 1만 호주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 및 5,000호주달러 이상의 외환을 송금하거나 및 수취할 때

2) 환율 제도

국제 수지 방어를 위해 1983년까지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 정부가 환율 결정 및 외환 수급 조절 등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했으나, 1983년 12월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환율이 시장 수급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되고 있는데, 호주 중앙은행이 1992년부터 지금까지 환율 시장에 개입한 사례는 총 13회에 그치고 있다.

당일 기준 환율, 기준 금리 및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정보는 호주 중앙은행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www.rba.gov.au)

외환 규제

1) 무역 대금 결제

L/C 방식의 대금 결제가 일반화돼 있으나 대형 수입상은 D/A 또는 D/P, 소형 수입상은 T/T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품 인도 후 입금도 매우 흔하다. 특히 호주 은행이 L/C 발행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담보액이 크고, 절차 지연 등으로 불측의 지급 지연상태가 있는 경우 등도 있어 L/C 개설을 꺼리는 바이어가 많다.

일반적인 송금의 경우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하나 5,000호주달러 미만인 경우는 30호주달러, 5,000~50,000호주달러의 경우는 50호주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최근에는 인터넷뱅킹으로 해외 송금을 바로 할 수 있게 돼 편리해졌으며 수수료 부담도 낮아졌다. 은행에서도 가급적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 현지 법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의 경우 해외 피 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난 후의 금액을 본사로 송금하는 것으로서 세후 소득이다. 이는 외국 피투자회사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간접 납부한 세금으로 볼 수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100% 공제 가능하고, 조세조약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50% 공제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주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조세 조약에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특법에 따라 50%만 공제가 된다.

3) 자금 조달

호주의 금융산업은 선진화돼 있으며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어 자금조달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다만 투명하게 관리되는 만큼 부정대출이나 대출서류 조작 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출 기관은 시중 4대 주요 은행 외에도 다수 은행 기관과 연금펀드 관리기관,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사가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중개 브로커들의 활동도 활발하므로 적법한 자금 조달은 원활하다.

호주의 시중금리는 연방준비은행이 지정하는 기본금리에 은행별로 마진을 붙여 대출 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호주의 통화는 원자재 가격에 연동돼 있어 변동성이 상당히 큰 편이며 변동성을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해 타 선진국 대비 이자율이 높은 편이다. 다만 최근 들어 국제적인 추세인 저금리에 코로나19 영향으로 호주 금리는 2020년 11월 기준 0.10%의 역대 최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 금리는 15~29% 정도로 다양하나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기준금리에서 약 3%의 마진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9.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호주의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기타권리(육종가 권리) 등으로 나뉜다.

특허 등록요건은 대체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보호 기간은 20년으로 동일하다. 차이점은, 1) 초기 발명에 대해 빠른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가출원제도(Provisional Application)가 있고, 2) 우리나라와 달리 이의신청제도가 있어 공고된 특허에 대해서는 3개월 내로 누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3) 호주에서는 특허법원이나 심판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확인을 거쳐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표제도는 우리나라와 대체로 유사하나, 거절이유가 이의신청 사유와 동일한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는 이의신청사유가 더 폭넓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디자인 제도에는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가 혼합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형식심사를 거쳐 디자인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유효심사확인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한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으로 비교적 짧고, 갱신 시 5년이 더 연장된다.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호주 1인당 국내총생산(명목 GDP)는 2019년 기준 53,825미국달러 이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호주의 인구는 약 2,565만 명으로 전년대비 1.4%의 인구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 인구 전망 중 연령에 따른 인구 구성은 0~14세가 전체 인구의 19%, 15~64세(노동인구)가 64.9%, 65세 이상이 16.1%를 차지할 예정이다. 이 중 월별 소비가 가장 높은 그룹은 30~40대로 5~14세 아이가 있는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했던 아시아 국가 비중이 2050년에는 아시아계 약 2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이들이 호주경제에서 소비의 주축 세력으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계 호주인은 호주 전체 인구의 16.3%를 차지하고 중국, 인도, 필리핀 커뮤니티가 이민자그룹에서 상위를 점유한다. 호주의 중국계 이민자는 120만 명, 인도계 이민자는 62만 명, 필리핀계 이민자는 30만 명, 베트남계 이민자는 29만 명, 말레이시아계 이민자는 14만 명, 한국계 이민자는 12만 명, 스리랑카계 이민자는 11만 명, 일본계 이민자는 7만 명으로 구성된다. 중국계 호주인은 시드니에서 영국, 호주, 아일랜드에 이어 4번째로 큰 인종 계통(Ancestry) 구성원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 사회가 호주 소비시장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원 : 호주통계청, WTO〉

소비 성향

호주 소매시장은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확산으로 불황을 맞았으나 연방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지급된 보조금으로 2020년 5월에는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닐슨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위생용품, 손소독제 등의 수요가 급증했고 영유아식과 냉동 식자재 등 가정 내 식품 소비가 증가했다. 화장품, 럭셔리 용품과 같은 비필수재 카테고리는 수요가 대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코로나 19 확산이 감소하면서 소비심리가 반등해 매출이 빠르게 회복됐다. 식품, 교육, 커뮤니케이션, 의료 서비스 지출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난 반면 여행, 대중교통, 저축 및 투자, 외식 및 의료비 지출은 대폭 감소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외출 및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면서 온라인 시장의 매출이 급증했으며 코로나 19가 불러온 비대면 트렌드로 인해 호주 소매시장 내 온라인 쇼핑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0년 7월 초부터 발생한 멜버른의 2차 코로나 감염 확산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멜버른은 7월부터 약 3개월간 2차 봉쇄(Lock-down)를 겪었으며 그 기간 동안 호주 지역간 경계 차단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인 소비 위축을 가중시켰다.

호주 내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경제 불황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산업은 서비스 산업이다. 대면 활동이 필수인 호텔, 여행사, 항공업, 요식업 등의 타격이 컸는데 호주의 감염 확산 완화에 코로나 이전 운영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위생, 방역 관리 규제에 따라 점진적인 운영 회복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11월 기준, 호주 전역의 코로나 지역 감염자 수가 0명에 가깝게 감염 상황이 안정되면서 주간 경제 봉쇄가 완화되고 있으며 연말 휴가시즌 및 성수기를 맞이해 회생하려는 서비스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 소비심리는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1년 중반까지 이민자 유입이 지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과 상업용 건설시장은 주춤한 상황이다. 호주 정부에서는 건설업을 촉진 시키기 위해 신축 주택건설과 레노베이션에 최대 2만 5,000호주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홈빌더 패키지(Home Builder Package)를 발표했다. 해당 지원정책을 통해 건설업계에 고용을 유지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호주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헬스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면서 헬스케어 분야는 국가 전체 경제 및 고용 면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상품 이미지

호주에서의 한국상품 인지도는 전자제품과 자동차, 화장품, 식품을 중심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호주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White Goods)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전체 유통시장의 10.9%와 7.7%를 차지하며 전체 3, 4위를 다투고 있으며, TV, 세탁기 등 품목에 따라서는 1, 2위를 차지한 경우도 있다. 특히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경우, 미국 애플사에 이어 호주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호주의 브랜드별 신차 판매 결과를 보면, 현대자동차가 86,104대를 판매하며 3위를 달성, KIA 자동차가 61,503대로 6위를 차지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현대의 i30 모델이 28,378대 판매되면서 토요타 HiLux와 Corolla, 포드 Ranger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KIA자동차 세라토는 21,757대 판매로 9위에 올랐다.

호주 내 아시안계 인구의 증가와 함께 한국산 화장품,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브랜드들의 호주 유력 화장품 편집매장への 입점이 이어졌고 일반 화장품 뿐만 아니라 미용 기기로 까지 그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 경우 한국의 김치 수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서구권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호주에 김치 수출량이 높다. 한국의 대호주 김치 수출액은 2019년 기준 348만 달러로 전년대비 12% 증가했으며, 총 수출량은 1,105톤에 이른다.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김치가 건강식인 동시에 채식 메뉴로 손꼽히면서 대형 슈퍼마켓 체인, 유기농 식품점 등에 입점한 상황이다. 현지 미디어, SNS 등을 통해 김치의 효능과 레시피 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호주에서 직접 김치를 생산하는 호주 식품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OEM으로 생산해 수출하는 기업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저장식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라면이 인기다. 호주의 전체 라면 수입국 중 우리나라는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입액이 33.4%나 증가했다. 홈쿠팡 트렌드로 한국 소스류의 수입도 2020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으며 고추장을 필두로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한국 요리를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소스류는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소량 수입 주문

시장의 규모가 작다 보니 미국이나 EU와 비교할 때 1회 주문량 자체가 소량일 경우가 많다. 심지어 TARGET, K-MART 및 BIG W, WOOLWORTHS와 같은 호주 대형 유통 체인점들의 주문량도 해외 공급업자들이 납품할 수 있는 최소 주문량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호주는 전체 인구가 2,565만 명(2020년 기준) 정도로 국토 대비 인구가 적은 국가로서 시장 규모도 미국과 비교해볼 때 대략 10분의 1 정도로 보면 된다.

시장규모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한 업체는 호주 최대 소매 유통 체인 중 하나인 TARGET사와 계약을 맺고 주문을 진행하였으나 미국 대비 주문량이 너무 적다고 실제로 실망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호주는 미국이나 유로존 국가보다 시장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이나 그만큼 보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성공적으로 공급을 시작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하면 쉽사리 공급선을 변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뉴질랜드와 남태평양 등지로 시장을 확대하기도 쉬워 소량이 라도 적극 대응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2) 미국 또는 호주 달러화로 FOB, CIF 기준의 견적 요구

수출을 하고자 하는 한국 업체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미국통화 통화를 기준으로 FOB 조건의 가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호주 업체들이 미국달러 통화를 수용하는 편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환위험 관리 및 계산상의 편리 때문에 자국 통화인 호주달러를 기준으로 FOB보다는 보험 및 운송료 가 포함된 가격인 CIF 가격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과 거래 경험이 없는 호주 업체들의 경우는 운송 및 보험에 관한 정보가 어두운 경우가 많으므로 FOB 가격과 함께 CIF 가격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계약 준수

호주인은 계약서에 작성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같은 기준의 윤리 수준을 요구하며 특히 대형 유통사의 경우 엄격한 윤리적 소싱 규정(Ethical Sourcing Policy) 준수를 제조사에 요구한다. 이에 대비하여 BSCI나 SEDEX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윤리 감사를 받아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호주 업체들은 주문 시 회사의 판매 계획을 감안하여 물품 인도 날짜를 지적하기 때문에 약속된 날짜를 맞추는 것은 호주 회사와 비즈니스의 기본이다.

4) 대금 결제 방식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안전한 L/C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대금 결제 방식도 L/C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D/A, D/P 조건 등 다양한 결제 조건을 수용하는 융통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호주의 많은 기업은 조금 규모가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L/C 개설 상의 절차상의 복잡성 및 자격 요건,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직송금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 또한 호주의 기업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므로 호주 기업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유연성 및 이해가 필요하다.

5) 선적 일자

호주 기업에 물어보면 한국 기업과 거래하기 제일 좋은 점 중의 하나가 빠르고 정확한 납기이다. 한국 업체들을 보면 납기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어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예상 기일보다 많게는 한 달 먼저 생산해서 선적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선적을 위해서는 바이어와 항상 의논을 먼저 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바이어의 경우 수요를 감안해서 Stock 관리 및 주문을 하게 되며, 만약 1개월 정도 먼저 제품을 공급받는다면 1 컨테이너 당 많게는 1억 호주달러가 넘는 돈이 바이어 입장에서 묶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호주 바이어는 빠른 선적보다는 기일을 맞추는 정확한 선적을 요구한다.

6) 관공서 관행

호주에서는 사회 관행상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회 정의가 확립되어 있고 모든 일에 원리원칙이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서는 뇌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세관의 수입 물품 통관 절차도 신뢰를 바탕으로 문서 심사 위주로 진행되나, 샘플링 검사에서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신뢰를 쌓기까지 이후 5~6회 동안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호주 관공서의 일 처리 태도는 매우 친절하나 절대 서두르지 않으므로, 한국처럼 일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관공서에서 특정 업무 담당자가 휴가(통상 1개월)를 떠나거나 장기 출장을 떠났을 경우, 그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달리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가 돌아올 때까지는 그 업무가 마비되나, 호주 사람들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비단 관공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2월 중반부터 약 한 달간은 현지 휴가 기간으로 종종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있다.

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역사기 주의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업체와의 거래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역사기는 상대방 또는 제 3자의 기망 행위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범죄행위이며 무역거래 일방의 부주의, 비고의성으로 인한 대금지연, 품질하자로 발생하는 무역 클레임과는 구분된다. 사기유형은 크게 6종류가 있으며 이메일사기, 결제사기, 선적불량, 서류위조, 금품사기, 불법체류이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에 따라 무역사기 건수 및 금액 모두 증가했으며 호주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에 비대면 전자 상거래 증가로 서류위조, 선적불량 등의 사기 급증과 함께 결제사기, 이메일사기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해당 사기가 발생하면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를 통한 범인검거, 채권 회수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사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대응방안으로서 수출기업은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 및 KOTRA 현지 무역관으로부터 업체 신용 또는 실제 존재여부 등을 조사 의뢰하여 거래 위험이 있는 업체는 아닌지 알아볼 수 있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회식

호주는 개인주의 사회이다. 비즈니스에서도 이러한 개인주의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진다. 모든 업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반적인 근무 시간에 이뤄지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후 5시가 되면 어김없이 퇴근한다. 누구도 타인의 자유시간을 침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끝난 후 밖에서 회식 자리를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직장 또는 사무실 근처 펍(Pub)에서 간단하게 맥주나 와인을 한 잔씩 들고 담소하는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가 회식시간을 당겨서 금요일 오후 2~3시 정도가 되면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맥주를 동료와 마시거나 근처 펍에서 마시고 퇴근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근무 시간이 끝난 후 술집에서 거래처를 따로 접대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일도 거의 없다. 이렇듯 호주 사람들은 타인의 개인 생활을 존중하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개인 생활을 보호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와 의무로 생각한다.

회식에서도 우리와는 달리 호주는 너무 개인적이거나 민감한 질문은 잘하지 않으며 수년간 같이 근무한 직장동료 간에도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결혼했는지 등 스스로 얘기하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초면에 개인신상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실례가 될 수 있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약속

면담이나 협상은 반드시 사전 약속(최소 2주 이상)을 통해 하되 주중 저녁 시간, 금요일 오후, 주말(토, 일요일)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격적인 업무 처리는 근무 시간 중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호주 사람들은 무척 가정적이다. 그래서 퇴근하면 대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다. 금요일 밤을 제외하고 오후 8시 정도가 되면 지하철과 도로는 한산하다. 이미 퇴근 시간대의 러시아워가 지난 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호주의 기업 및 업체들 사이에 온라인 비대면 상담이 확산되고 있다. 상당수 호주 기업들이 호주 정부의 봉쇄 완화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 바이어들은 방문 면담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업체들은 교신하려는 호주 기업 및 업체의 현지 여건을 파악하여 적절한 면담 및 협상 방법을 협의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비용과 시간면에서 효율적인 온라인 상담이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내 업체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온라인 상담 플랫폼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3) 선물

호주에서 일반적으로 선물은 마음의 표현일뿐, 한국식 관습으로 고가의 선물이나 유가증권(상품권 및 현금 등)을 주고받는 경우는 없다.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백화점 상품권이나 고가의 양주 및 고급 만년필 등의 선물은 받는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 향후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도 받을 수 있어 피하는 게 좋다. 그러나 가벼운 선물 등은 쉽게 주고받는 경우가 많으며 실용적인 품목들이 인기가 많다. 물론 매번 만남 때마다 선물을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보통 준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무역관의 밀착 지원으로 까다로운 호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

호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연 10%가 넘는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다수 호주 제조사들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는 호주가 아닌 타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강점이 있는 한국 J사는 이러한 호주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2019년4월 호주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시드니무역관과 협업하기 시작했다. J사는 무역관 지원 하에 약 30여개 호주 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무역관은 J사와 무역관 소재지 외 지역까지 동행 출장하며 지원했다. 현지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테스트 및 제품 등록절차를 출시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는 발빠른 생산업체 선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J사가 현지 유통 제품들이 한국만큼 포장방식이나 섭취방법이 간편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제품 컨셉 및 패키징을 현지 소비자에게 어필하도록 개발한 점도 유효했다. 해당 제품은 2020년12월 현재, TV광고를 통해 인지도 상승을 꾀하고 있으며 TV 홈쇼핑 외 호주의 대표적인 드럭스토어를 통하여 판매 중이다.

2) 시의적절한 마케팅 지원으로 코로나19에도 호주에 성공적으로 런칭한 국내 전해수기

호주 가정 내 친환경, 인체에 무해한 생활용품 관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생, 방역 용품에 대한 관심 및 구매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호주 현지 시장에 관련 소비재는 많이 출시되어 있으나 기술 기반의 생활가전은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시드니무역관은 코로나 이전부터 잠재 가능성 높은 시장임을 판단하고 국내 전해수기 제조기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호주 시장에서는 새로운 카테고리인 점과 우리나라 제조사만의 차별화된 기술을 어필하여 현지 바이어 발굴에 성공하였고 2019년 6월에는 현지 바이어의 방한을 추진, 국내사와 MOU 체결함으로써 현지화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20년 초 시드니무역관 지원하에 호주 현지 유통망 입점을 추진하던 차에 코로나 확산기와 맞물렸으나 무역관은 홈코노미 트렌드에 주목해 호주 대형 TV 홈쇼핑 채널을 통한 런칭 프로모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해수기는 성공적인 1차 TV 홈쇼핑 판매로 2020년 코스트코 매장에 입점하였으며 해당 기업은 이러한 호주 시장으로의 진출을 발판 삼아 전 세계 수출 활로를 개척 중이다.

3) 바이어와 미팅 전부터 철저한 준비와 팔로우업으로 안정적인 수출길 확보

공장이나 냉장 시설에 들어가는 판넬 제조 업체 B사는 대리점을 통해 뉴질랜드로 수출 중이나 호주에는 거래선이 없어 무역사절단에 참가 신청을 하여 2019년 6월에 호주를 방문하였다. 사절단 당일 호주 건설 시장 점유율 1위인 건설사 C 기업을 포함해 무역업체, 냉장/냉동 시공 업체 등과 미팅을 진행한다. 특히 사절단 미팅 전 큰 관심을 보였던 한 호주 업체와 미리 FOB 가격 및 제품 상세 스펙을 전달해 더욱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했다. 사절단 행사 당일 한국업체를 직접 만나게 된 동 바이어는 한국 제품과 회사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사절단 행사 후에도 멜버른 무역관으로부터 긴밀한 후속 지원을 받아 호주에서 유통하는데 필요한 인증 Insulation Australian standard를 획득한다. 2019년 9월 첫 호주 수출을 달성한 후 누적 12만 달러에 달하는 안정적인 수출길을 열기에 이른다.

4) 바이어를 놀라게 한 제품 자료와 시장조사를 통한 타깃 가격 제안으로 호주 대형 유통망 직접 입점 성공

호주는 높은 인건비와 함께 지난 10년간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DIY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볼트와 너트 없이 조립하는 DIY 철제 선반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Y사는 현지 시장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호주 1위 유통사인 Bunnings Warehouse를 발견했다. 구매담당자와 빨리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멜버른 무역관에 사업파트너 연결지원을 신청한 후 바이어와 연락을 추진하고 해외출장지원을 통해 무역관 담당자와 바이어의 본사를 방문해 미팅을 진행한다.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제품 소개와 FOB 가격이 기재된 자료를 만들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을 했다. 호주도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최저가 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격은 협상 불가할 정도의 가격으로 오퍼한다. 1년간의 노력 끝에 2019년 3월 호주 첫 선적을 시작해 총 15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으며 호주 전역의 매장에 입점하는 성과를 이룬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관광, 상용 비자는 호주대사관을 통해 발급받거나, 20호주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ETA를 인터넷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없다. ETA를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인터넷 서비스비로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하여 신청할 경우 대개 12시간 이내에 비자 취득이 가능하지만, 소수의 신청자는 간혹 승인되기 전에 추가 확인을 위해 호주 대사관으로 문의하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최소 5일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에는 여행 목적에 맞는 다른 적합한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ETA 비자는 유효한 여권 소지, 방문목적이 여행, 친지 방문 또는 회의나 컨퍼런스 참석일 경우, 호주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을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범죄사실이 없는 경우, ETA 시스템 회원사인 항공사로 여행할 경우 취득이 가능하다. 3개월 이상 체류 시 단기방문/상용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이는 주한 호주대사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관련 정보 <https://southkorea.embassy.gov.au/seolkorean/home.html> 를 참조)

코로나19 관련 호주 정부는 2020년 3월 20일 저녁 9시(호주 동부 표준시)를 기해 모든 외국인의 호주 입국을 금지했으며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그들의 직계가족만 입국을 예외 허용했다. 해당 조치는 2020년 11월 시점에도 유효한 상황으로 직계가족의 입국을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국제한 면제신청이나 추가 정보 제출이 요구된다. 호주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즉시 출입국, 세관 및 강화된 건강체크를 받은 후 지정된 시설로(예: 호텔 등) 곧바로 보내지고, 14일간 강제 격리되며 장소 및 제반 사항은 입국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지정 시설은 해당 주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국내 거주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의 해외여행도 2020년 3월부터 제한을 받고 있는데 출국 제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정보 <https://covid19.homeaffairs.gov.au/leaving-australia#toc-2> 를 참고)

호주 정부는 해외여행 재개 시점을 2021년 7월로 예상하고 있는 한편,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뉴질랜드,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과 의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국가간 여행 자유화 협의)을 적극 논의할 것으로 밝혀왔다. 그 시작으로 2020년 10월 16일부터 뉴질랜드에서 14일간 거주한 여행객들은 격리 없이 호주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해졌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외화 반·출입 한도

호주 입국 시 10,000호주달러 이상(또는 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환)을 휴대 시 별도 양식(AUSTRAC Cross Border Movement - Physical Currency)으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찰 외에 환어음, 여행자 수표, 개인 수표, 약속어음, 무기명 채권, 우편환, 송금수표, 무기명 주식 등은 호주 정부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2) 휴대품 면세한도

검역부(Customs, Quarantine and Wildlife Statement)에 명시된 신고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검사대를 통과(통과 시 동 Statement 제출)한다. 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일반적으로 150~300호주달러 상당)이 부과되며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취소되거나 호주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호주 입국 시 일부 방문객의 경우 입국 심사 시간을 절약하거나 세금 등의 우려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부분 적발되어 벌금을 내고 입국 심사도 훨씬 길어지는 등 불이익이 크므로 반드시 통관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만을 위한 세관 검사대에서 휴대품을 검사 받는다. 신고된 식품 등이 친지 선물용 정도로 판단될 경우 세관 검사는 간략한 검사로 통과된다.

○ 허용되는 면세 물품 범위(18세 이상의 성인만 적용)

- 900호주달러까지의 면세품은 허용되나 담배나 주류제품은 제외(18세 미만인 사람에게서는 450호주달러까지만 허용)
- 2.25리터의 주류제품 허용
- 담배 25개피 또는 여연송(cigars) 25그램 초과 반입 불가
- 김, 고추장 등 식품의 경우, 밀폐 포장되고 내용 성분 표기가 명확한 제품만 휴대 반입이 허용되며, 집에서 담근 고추장, 김치 등 식품은 모두 압류 조치됨

특히, 담배의 경우 호주와 한국 간의 담배가격이 5~8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몰래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호주 당국 관계자들로 부터 엄격한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 경우 모든 소지품을 꼼꼼히 검사하게 되며 입국 심사 시간도 2배 가량 더 걸리기 때문에 25개피 이상 담배는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골프화나 운동화를 지참할 경우에도 입국신고서에 휴대하고 있음을 표기하여야 하며, 신발 바닥에 흙이 묻어있을 시 세관이 소독작업을 거친 후 통관을 허용하기 때문에 통관 수속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호주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61-2-6270 4100
주소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ko/index.do
비고	강정식 대사

○ 시드니총영사관

전화번호	+61-2-9210 0200
주소	Level 10, 44 Market Stree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sydney-ko/index.do
비고	홍상우 총영사

○ 주 멜번 대한민국분관

전화번호	+61-3-9533 3800
주소	Level 10, 636 St Kilda Rd, Melbourne VIC 3004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melbourne-ko/index.do
비고	전한일 총영사

○ 한국관광공사

전화번호	+61-2-9252 4147
주소	1807/264 George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visitkorea.org.au
비고	이인숙 지사장

○ 한국광물자원공사

전화번호	+61-2-8907 3000
주소	Suite 1101/50 Berry Street, North Sydney NSW 2060

홈페이지	http://www.kores.or.kr
------	---

○ 시드니한국문화원

전화번호	+61-2-8267 3400
주소	Ground floor, 255 Elizabeth Stree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koreanculture.org.au
비고	박소경 원장

○ 호주시드니한인회

전화번호	+61-2-9798 8800
주소	82 Brighton Ave, Croydon Park NSW 2133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au
비고	윤광홍 회장

○ 호주퀸즐랜드주한인회

전화번호	+61-424 724 624
주소	1406 Beenleigh Road Kuraby QLD 4112
홈페이지	http://www.ksqld.org

○ 호주골드코스트한인회

전화번호	+61-7-5594 7533
주소	PO BOX 7968 Bundall QLD 4217
홈페이지	http://www.qldkorean.com

○ 호주빅토리아주한인회

전화번호	+61-452 355 576
주소	PO BOX Huntingdale Huntingdale VIC 3166
홈페이지	https://koreansociety.com.au/
비고	김서원 회장

〈자료원 : 기관별 홈페이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호주무역투자진흥공사(AUSTRADE)

전화번호	+61-2 9392 2000
주소	Level 7, Tower 3, International Towers, Barangaroo,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austrade.gov.au

◦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전화번호	+61-2 6261 1111
주소	R.G. Casey Building, John McEwen Crescent Barton ACT 0221
홈페이지	http://www.dfat.gov.au

◦ 호주관세청(Australian Border Force)

전화번호	+61-131 881
주소	10 Cooks River Drive Mascot NSW 2020
홈페이지	https://www.abf.gov.au/

◦ 호주검역청(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전화번호	+61-2 6272 3933
주소	18 Marcus Clarke St, Canberra ACT 2601
홈페이지	http://www.agriculture.gov.au

◦ 호주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전화번호	+61-13 72 26
주소	Woden Service Centre, Penrhyn House, 6 Bowes St Woden ACT 2606
홈페이지	http://www.ato.gov.au

◦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전화번호	+61-2 9268 4909
주소	ABS House 45 Benjamin Way, Belconnen ACT 2617
홈페이지	http://www.abs.gov.au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전화번호	+61-1300 300 630
주소	100 Market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asic.gov.au

○ 호주증권거래소(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전화번호	+61-2 9227 0000
주소	20 Bridge Stree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s://www.asx.com.au

○ 호주국가표준 감독(Standards Australia)

전화번호	+61-2 9237 6171
주소	10 The Exchange Centre, 20 Bridge Stree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standards.org.au

○ 호주지재권감독정부기관(IP Australia)

전화번호	+61-2 6283 2999
주소	Ground Floor, Discovery House, 47 Bowes Street Phillip ACT 2606
홈페이지	http://www.ipaustralia.gov.au

○ 해외투자승인기관(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전화번호	+61-2 6216 1111
주소	The Treasury Langton Crescent Parkes ACT 2600
홈페이지	http://www.firb.gov.au

○ 녹색산업대표단체(Clean Energy Council)

전화번호	+61-3 9929 4100
주소	Level 15, 222 Exhibition Street, Melbourne VIC 3000
홈페이지	http://www.cleanenergycouncil.org.au

○ 호주에너지공급기업대표단체(Australia Energy Supply)

전화번호	+61-3 9205 3100
주소	Level 14, 50 Market Street Melbourne 3000
홈페이지	http://www.energycouncil.com.au

○ 호주공영방송기관(Special Broadcasting Service)

전화번호	+61-1800 500 727
주소	14 Herbert Street, Artarmon NSW 2064
홈페이지	http://www.sbs.com.au

○ 나인 네트워크 방송(Nine Network)

전화번호	+61-2 9906 9999
주소	Australia Square, 264 George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nine.com.au

○ 디 오스트레일리안 신문(The Australian)

전화번호	+61-2 9288 3000
주소	2 Holt Street, Surry Hills NSW 2010
홈페이지	http://www.theaustralian.com.au

○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Sydney Morning Herald)

전화번호	+61-2 9282 2833
주소	1 Darling Island Rd, Pyrmont NSW 2009
홈페이지	http://www.smh.com.au

〈자료원 : 기관별 홈페이지〉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36 AUD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4.35
2	식품	비빔밥	1인분	10.1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0.1
4	식품	신라면	1봉지	1.25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2.62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0.74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1.42
8	의료	항생제	12정	9.1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1.95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3.02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2.42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23.94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0.94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18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14.15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23.54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8.08
18	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법정최저	13.22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최대)	연간	27593.63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0.1

<자료원 : 시드니무역관 자체 조사>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 단위는 Australian Dollar(A\$)이며, A\$ 1 = 100Cents이다. 원래는 파운드화를 사용했으나, 1966년부터 달러화 제도를 도입했다. 지폐의 종류는 A\$ 100, 50, 20, 10, 5 등 5종이며, 동전의 경우에는 A\$ 2, 1, Cents 50, 20, 10, 5 등 6종이 있다.

호주준비은행은 호주 차세대 화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과 2017년 A\$ 5권과 A\$ 10권 지폐를 각각 발행하여 현재 구권과 신권이 함께 통용 중에 있다. 2018년 10월과 2019년 10월에는 A\$ 50권 및 A\$ 20권 신권을 각각 발행하였으며 2020년 10월에는 A\$ 100 신권을 발행하였다.

환전방법

호주에서 원화로의 환전이 번거로울 수 있어 한국에서 주거래 은행을 통해 환율 우대를 적용받거나 환율 우대 쿠폰을 사용해 환전하는 것이 좋다.

물론, 호주 공항, 시중 은행 및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환전소에 비해 유리한 환율이 적용되나 은행 환전 수수료가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소액을 환전해야 할 경우라면 공항이나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환전 금액이 클 경우 필히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환전 시 창구에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이나 여권을 요구하므로 사전에 이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상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일부 소형 카페나 레스토랑, 상점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해야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도 있다. 또는 신용카드 사용 시 1% 내외의 수수료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형마트, 백화점, 레스토랑에서는 신용카드를 받고 있으며, 현금카드인 직불카드(Debit Card) 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나. 교통

교통상황

호주의 버스, 전철 등의 대중 교통편이 잘 돼 있는 편이지만, 호주의 초행길인 출장자가 자칫 목적지에 정확히 내리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약속 시각을 놓치기 쉽다. 그래서 지리에 밝지 못한 출장자들에게는 장거리가 아닌 경우, 택시 이용이 권장된다. 요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장거리인 경우에는 전철을 이용해 목적지 근처에서 하차한 후 다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호주 내 대도시에서는 공유 차량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다. 공항 및 대형 쇼핑몰의 경우 해당 공유 차량 이용객들을 위한 승하차 구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이다. 해당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고 수월하다면 택시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예상 소요 시간 및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시드니의 경우 통용되는 대중 교통카드는 오팔카드(Opal Card)이며 어린이, 학생, 노약자용 카드가 별도로 있다. 구매는 호주 내에 주소지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주문하거나 편의점, 신문가판대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일반 성인용 오팔카드의 최저 충전 금액은 A\$ 20.00이며 운임은 거리와 시간대에 따라 상이한데 10km 미만 지하철/메트로 기본요금은 (A\$ 3.61), 시내버스 3km 미만

(A\$ 3.20) 이다. 멜버른의 경우 마이키 카드(Myki Card)를 구매해야 하며 (A\$ 4.50 / 2시간, A\$ 9.00/ 1일) 메트로, 버스, 트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버스

시내버스의 경우, 다양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10분에서 15분 간격 정도로 빈번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빈도수가 줄어들어 약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시드니 지역은 나이트라이드(Night Ride)가 버스 운행 마감 시간 이후 운행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전철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다가오면 손을 가볍게 흔들어 신호를 보내야만 버스가 정차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나쳐 갈 수 있다. 버스 요금은 버스 운전자에게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게 되었고 미리 지역별 버스카드 또는 현지 신용카드를 지불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버스 승차시 입구와 하차 출구에 카드 리더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승차시와 하차시 각각 한 번씩 카드를 얹혀야(Tap on/off) 정확한 요금이 책정될 수 있다.

버스요금은 성인기준 0~3km 구간 A\$ 2.90(오파카드 사용 시 A\$ 2.24), 3~8km 구간 A\$ 4.60(오파카드 사용 시 A\$ 3.73), 8km 이상 A\$ 6.00(오파카드 사용 시 A\$ 4.80) 이다. 일부 버스의 경우 현금을 받지 않고, 오파카드(호주의 교통카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가능한 오파카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시드니의 경우, 버스 정류장 안내 멘트나 표시가 따로 없어 본인이 내려야 하는 정거장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버스 기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멜버른에서 운행되는 버스는 외곽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주로 이용하며 마이키 카드(A\$ 4.50 / 2시간, A\$ 9.00/ 1일)로 탑승이 가능하다. 자정 이후 도시에서 교외로 이동하고자 하는 여행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은 나이트라이더(NightRider) 버스이다. 나이트라이더는 콜린스 거리(Collins Street)와 플린더스 거리(Flinders Street)사이의 스완스톤 거리(Swanston Street)에서 탑승하며, 토요일은 새벽 1시 30분~4시 30분 사이, 일요일 새벽 1시 30분~5시 30분 사이 30분마다 한 대씩 출발한다.

택시

호주의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이 약 A\$ 3.60이나, 탑승과 동시에 시간, 거리 병산제가 적용된다. 1Km마다 A\$ 2.19가 부가되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는 1Km당 A\$ 2.63이 부가된다. 그리고 도심 지역에서의 26킬로미터 미만으로 정해진 도로를 지나가는 경우에는 1분당 94센트가 부가된다. 그 외에도 시내외 산재해 있는 유료도로이용요금, 공항 특별요금(A\$ 4.10), 예약비(A\$ 2.50) 등 각종 추가 요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호주에서 택시를 이용하면 굉장히 비싸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도심 지역이나 모든 전철역에는 택시들이 많아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변두리 지역에서 택시를 잡아야 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콜택시를 부르면 10분 안에 주변에 머물던 택시가 픽업을 하러 오나, 영어에 문제가 있거나 주소를 모르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호주의 공항에는 여행자 편의를 위해 시내 관광 안내책자를 공항 안 여러 곳에 비치돼 있으며,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는 도중 중간마다 비치된 안내책자는 무료이기 때문에 한 권쯤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 책자는 주요 지역별 지도, 전철 노선도, 기타 가볼 만한 곳, 쿠폰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트램

시드니에는 라이트 레일(Light Rail)이라고 불리는 트램이 있다(멜버른에서는 트램 이라고 지칭함). 라이트 레일은 달링하버와 차이나타운을 경유하여 센트럴 스테이션과 덜치힐 구간을 운행한다. 운행시간은 구간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6시부터 23시까지 운행되며,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6시부터 24시까지 운행된다. 요금은 기본요금 A\$ 2.90(오파카드 사용 시 A\$ 2.24)이며, 최대 A\$ 6.00(오파카드 사용 시 A\$ 4.80)까지 소요된다.

멜버른을 상징하는 것 중의 하나가 트램일 정도로 트램은 멜버른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교통수단 중 하나이며 도시의 다운타운은 물론 시내 주요 지점에서 리치몬드, 세인트 킬다, 야라 남부 등의 교외까지 연결되어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5시부터 시작하여 자정까지,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는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운행한다. 일요일에는 오전 7시에 출발하여, 오후 11시까지 운행하고 주요 트램 역에서는 버스와 기차와도 연계할 수 있다.

페리

시드니에는 페리라고 불리는 수상 교통수단이 있다. 총 8개의 노선이 있으며 시드니 시티 서큘러키 항을 기점으로 운행된다. 페리는 출퇴근 및 일반 교통수단의 역할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의 관광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페리 운행시간은 날씨, 구간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NSW Transport 홈페이지 또는 항구 전광판 등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기본요금은 A\$ 7.60(오파카드 사용 시 A\$ 6.12)으로 비싼 편이며, 최대 A\$ 9.40(오파카드 사용 시 A\$ 7.65)까지 소요된다. 일요일에는 이용구간에 상관없이 무제한 A\$ 2.90(오파카드 사용 시 A\$ 2.24)에 대중교통과 페리선을 이용할 수 있다.

다. 통신

핸드폰

핸드폰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전화기기에 따른 주 통신사의 플랜(약정) 정보를 검토한 뒤 마음에 드는 통신사를 선택해야 한다. 주 통신사로 는 텔스트라, 옴터스, 그리고 보다폰이 있는데 통신사별로 약정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 다르다. 텔스트라의 경우 수신율이 제일 좋은 반면, 통화료가 비싼 편이고, 옴터스와 보다폰은 제공되는 혜택은 텔스트라보다 나을지 모르나 수신율은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매월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24개월 약정을 계약하면 이에 따른 핸드폰을 무료로 제공받거나 할부로 핸드폰을 구입할 수가 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핸드폰이 있다면 플랜(약정)이 없이도 개통할 수도 있다. 가입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여권 또는 체류증,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기세 혹은 은행명세서), 은행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

인터넷(와이파이)

인터넷의 경우 텔스트라와 옴터스 외에 좀 더 저렴한 TPG가 있다. TPG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서비스가 텔스트라나 옴터스에 비해 조금 아쉽다. 그리고 텔스트라와 옴터스로부터 라인을 할당받은 중소 ISP 업체들이 대형통신사와의 경쟁하기 위해 보다 좋은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중소ISP는 TPG와 iiNet, Exetel 등이 있다. 광통신망 NBN 상품으로 월 A\$ 65~95선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각 업체는 통상 최소 1년에서 2년의 계약 기간을 요구하는데 선불(Prepaid) 방식의 무선인터넷(4G)을 이용하면 원하는 기간만큼만 사용하고 장비는 재판매가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4G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업체는 Telstra, Optus, Vodafone, TPG, Virgin mobile, Unwired 등이다.

라. 관광명소

o 그레이트 오션로드(Great Ocean Road)

도시명	멜버른
주소	Great Ocean Road, VIC
운영시간	월~일: 24시간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멜버른 남서쪽의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토키(Torquay)에서 론(Lorne), 아폴로베이(Apollo Bay), 포트캠벨(Port Campbell) 국립공원, 와남불(Warrnambool)에 이르는 300km의 해안길로 해식작용으로 형성된 다양한 형상의 바위섬과절벽이 자연과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

○ 필립 아일랜드 자연공원(Phillip Island Nature Parks)

도시명	멜버른
주소	1019 Ventnor Road, Ventnor, VIC 3922
운영시간	월~일: 9~17시
휴무일	성탄절
명소소개	필립 아일랜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27~33cm 크기의 난쟁이 펭귄의 서식지로, 해가 진 이후 저녁나절에 바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경겨운 펭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음. 펭귄의 귀가 시간은 계절마다 상이하므로 출발 전 확인이 필요하다.

○ 피츠로이 정원(Fitsroy Garden)

도시명	멜버른
주소	Wellington Parade, East Melbourne VIC 3002
운영시간	월~일: 24시간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멜버른 시내 서쪽에 위치한 정원으로 빅토리아주(VIC)가 뉴사우스웨일즈주(NSW)로부터 분리될 당시 NSW주총독인 찰스 피츠로이(Charles Fitzroy)경의 이름을 따랐으며 하늘에서 보면 영국의 유니온잭의 모양을 따라 공원 내 산책로를 만든 것을 볼 수 있다.

○ 퀸 빅토리아 마켓(Queen Victoria Market)

도시명	멜버른
주소	Queen Street, Melbourne VIC 3000
운영시간	월: 9~16시, 화,목,금: 6~15시, 일: 6~16시
휴무일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명소소개	멜버른 시내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1878년부터 오픈했다. 현재 멜버른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한국의 남대문 시장처럼 호주 서민들의 생활을 쉽게 엿볼 수 있는 곳이다.

○ 단데농 마운틴 전망대(SkyHigh Mount Dandenong)

도시명	멜버른
주소	26 Observatory Road, Mount Dandenong VIC 3767
운영시간	월~일: 9~20시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단데농 마운틴은 멜버른 도심의 30km 남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전망대에서 멜버른 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단데농 마운틴은 부드러운 굴곡을 이룬 야라 밸리(Yarra Valley)가 바로 옆에 있으며 호주 빅토리아주의 최고 와인 생산지로 손꼽힌다.

○ 오페라 하우스(Opera House)

도시명	시드니
주소	Bennelong Point, Sydney NSW 2000
운영시간	월~토: 9시~20시 30분 일: 9~17시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1957년 1월 발표된 설계공모에서 덴마크의 건축가 John Utzon이 당선되어 1959.3 ~ 1973.9에 완공됐다. 매년 평균 약 3,000회의 행사와 200만 명 가량의 관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콘서트홀, 오페라 극장, 드라마극장, 연극관, 리셉션 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왕립 식물원(Royal Botanic Garden)

도시명	시드니
주소	Mrs Macquaries Road, Sydney NSW 2000
운영시간	월~금: 7시~17시 30분 토, 일: 7시~17시 30분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시드니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온하고 녹색 분위기가 가득한 곳으로서 Harbour Bridge, Opera House와 시내를 관광할 수 있다. 1816년에 설립되었으며, 면적은 약 54헥타르이고, 시민, 관광객의 산책 공원으로 애용된다.

○ 세인트 메리 대성당(St Marys Cathedral)

도시명	시드니
주소	2 St Marys Road, Sydney NSW 2000
운영시간	월~일: 6시 30분~18시 30분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1868년에 건설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 완공된 성당으로 하이드 파크 옆에 위치하고 있다. 호주 초기 영국에서 추방되어 온 죄수들의 숙소 근처에 건설되었으며 성모 마리아를 기리기 위하여 이름을 세인트 메리로 지었다. 중세고딕양식을 재현한 구조로 높은 천정과 스테인글라스 창문, 2개의 첨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규모는 길이 107m, 첨탑의 최고 높이 74.6m이다.

○ 하이드 파크(Hyde Park)

도시명	시드니
주소	Elizabeth Street, Sydney NSW 2000
운영시간	월~일: 5~24시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하이드 파크는 시드니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건설됐다. 주변에는 NSW주 법원, 세인트 제임스 교회, 세인트 메리 대성당, 호주 박물관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공원 중앙을 파크 스트리트가 가로고 있어 하이드 파크는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 식민시대 초기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됐으며 크리켓, 경마 등의 경기가 열렸다.
------	---

◦ 블루 마운틴 국립공원(Blue Mountain National Park)

도시명	시드니
주소	23-31 Echo Point Road, Katoomba NSW 2780
운영시간	월~일: 9~17시
휴무일	성탄절
명소소개	시드니 서쪽 약 100km에 소재하는 호주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대협곡이다. 급변하는 일기에 따른 풍경이 장관으로 세계 유명화가들의 주요 소재지이기도 하다. 주요 관광 포인트는 세자매봉(Three Sister), 에코 포인트(Echo Point), 오솔길과 대협곡 및 폭포, 수많은 야생조류 및 갖가지 식물군, 케이블 관광열차 등이 있다.
비고	블루 마운틴 국립공원 주소는 최대 명소인 에코 포인트로 기재

〈자료원 : City of Sydney, City of Melbourne, 명소별 대표 홈페이지〉

마. 식당

- 현지식당

◦ 레어 스테이크하우스(Rare Steakhouse)

도시명	멜버른
전화번호	+61 3 9663 3373
주소	6/61 Little Collins St, Melbourne VIC 3000
가격	A\$ 40~60
영업시간	월~일: 12~15시, 17시30분~23시
휴무일	성탄절
소개	가격대는 1인 기준, 호주식 스테이크 전문 레스토랑으로 주요 메뉴는 스테이크, 립(갈비) 등이다.

◦ 그라디 크라운(Gradi Crown)

도시명	멜버른
전화번호	+61 3 9292 5777
주소	Whiteman St, Southbank VIC 3006
가격	A\$ 30~40

영업시간	월~일: 12~23시
휴무일	없음
소개	가격대는 1인 기준. 이탈리아 식당이며, 주요 메뉴는 피자, 파스타 등이다.

◦ 하이어 그라운드(Higher Ground)

도시명	멜버른
전화번호	+61 3 8899 6219
주소	650 Little Bourke St, Melbourne, VIC 3000
가격	A\$ 10 ~30
영업시간	일~수: 8~16시, 목~토: 8~22시
휴무일	성탄절
소개	가격대는 1인 기준. 멜버른에서 유명한 카페로 주요 메뉴는 브런치, 런치, 퓨전요리 등이다.

◦ 키수메(Kisumé)

도시명	멜버른
전화번호	+61 3 671 4888
주소	175 Flinders Ln, Melbourne VIC 3000
가격	A\$ 50~70
영업시간	월~일: 17시~20시30분
휴무일	성탄절
소개	가격대는 1인 기준. 모던 일식당이며, 주요 메뉴는 스시, 사시미, 해산물, 육류 요리 등이다.

◦ 더 미트 앤 와인 코(The Meat and Wine Co)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8629 8888
주소	Ground level, 100 Barangaroo Avenue, Barangaroo NSW 2000
가격	A\$ 40~60
영업시간	일~목: 12~22시 금~토: 12시~22시 30분
휴무일	없음
소개	가격대는 1인 기준, 호주식 스테이크 전문 레스토랑으로 주요 메뉴는 육류 및 해산물 꼬치 요리, 스테이크, 립(갈비) 등이다.

◦ 킹스레이스 스테이크하우스(Kingsleys Steakhouse)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9295 5080
주소	29A King Street, Sydney NSW 2000
가격	A\$ 40~60
영업시간	월~토: 12~15시, 17시 30분~22시
휴무일	일요일, 월요일
소개	가격대는 1인 기준. 호주식 스테이크 전문 레스토랑으로 주요 메뉴는 스테이크, 구운 생선 등이다.

◦ 포춘 빌리지(Fortune Village)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9299 7273
주소	209 Clarence St, Sydney NSW 2000
가격	A\$ 20~30
영업시간	월~토: 11시 30분~14시 30분, 17시 30분~21시 30분
휴무일	일요일
소개	가격대는 1인 기준. 주요 중식당으로 메뉴는 생선, 소고기 및 돼지고기 요리 등이 있다.

◦ 골든 센츄리(Golden Century Seafood Restaurant)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9212 3901
주소	393-399 Sussex St, Sydney NSW 2000
가격	A\$ 30~50
영업시간	월~일: 12~익일 4시
휴무일	없음
소개	가격대는 1인 기준. 중식당이며, 주요 메뉴는 바다가재, 왕게, 새우, 전복 등 해산물 요리 등이다.

〈자료원 : 식당별 홈페이지〉

- 한국식당

◦ 만두(Mahn doo)

도시명	멜버른
-----	-----

전화번호	+61 3 9670 1167
주소	365 La Trobe St, Melbourne, VIC 3000
가격	A\$ 15~25
영업시간	월~일: 17시 30분~22시
휴무일	없음
소개	주요 메뉴는 만두, 한식찌개, 비빔밥 등이며 비교적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한식점이다.

◦ 궁(Guhng The Palace)

도시명	멜버른
전화번호	+61 3 9041 2192
주소	19 McKillop St, Melbourne, VIC 3000
가격	A\$ 15~30
영업시간	월~일: 18~22시
휴무일	없음
소개	주요 메뉴는 한식 바베큐, 요리 등이며 비교적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한식점이다.

◦ 북창동 순두부(Dooboo)

도시명	멜버른
전화번호	+61 406 712 47
주소	261 Swanston St, Melbourne VIC 3000
가격	A\$ 15~25
영업시간	월~목: 11시 ~21시 30분, 금~토: 11시 30분 ~22시, 일:12~21시

◦ 스시 앤 그릴(Sushi and Grill)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9264 7888
주소	LG 119 York St, Sydney, NSW 2000
가격	A\$ 13~20
영업시간	월~토: 11시 30분~15시, 17시 30분~21시 30분
휴무일	일요일
소개	주로 일식을 판매하고 있으나 한인 교민이 운영하는 일식당으로 김치볶음밥, 회덮밥 등 일부 한식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메뉴는 스시, 사시미, 회덮밥, 우동, 카레 등이다.

○ 단지(Danjee)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8084 9041
주소	1-7 Albion Pl, Sydney NSW 2000
가격	A\$ 18~50
영업시간	월~일: 11시 30분~익일 1시
휴무일	없음
소개	주요 메뉴는 갈비탕, 제육볶음, 숯불 불고기, 소꼬리찜 등이며 비교적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한식점이다.

○ 시드니 마당(Sydney Madang Korean BBQ)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9264 7010
주소	371A Pitt St, Sydney NSW 2000
가격	A\$ 15~25
영업시간	월~일: 11시 30분~익일 2시
휴무일	없음
소개	주요 메뉴는 갈비탕, 제육볶음, 숯불 불고기, 소꼬리찜 등으로 한국인과 중국인들의 방문이 많은 식당이다.

〈자료원 : 식당별 홈페이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옥스 온 마켓(Oaks on Market)

도시명	멜버른
주소	60 Market Street Melbourne VIC 3000
전화번호	+61 3 8631 1111
홈페이지	https://www.oakshotels.com/en/oaks-on-market
숙박료	A\$ 204~290(일반객실, 1박 기준)
소개	콘도형 호텔로 방에 부엌 및 취사도구 구비되어 있다. 시내 아라강과 쇼핑센터 등의 중심지와 근접하다.

◦ 인터콘티넨탈 멜버른(InterContinental Melbourne)

도시명	멜버른
주소	495 Collins Street, Melbourne VIC 3000
전화번호	+61 3 8627 1400
홈페이지	https://www.melbourne.intercontinental.com
숙박료	A\$ 285~350(일반객실, 1박 기준)
소개	멜버른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던크로스(Southern Cross)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고딕 건축 양식을 간직하고 있으며 주변에 고객 미팅이 가능한 카페도 다수 위치하고 있다.

◦ 호텔 그랜드 찬슬러(Hotel Grand Chancellor)

도시명	멜버른
주소	131 Lonsdale Street Melbourne VIC 3000
전화번호	+61 3 9656 4000
홈페이지	http://www.grandchancellorhotels.com/au/melbourne/
숙박료	A\$ 169~250(일반객실, 1박 기준)
소개	비즈니스 호텔로 방 사이즈가 작은 편이며 인터넷은 무료이다. 시내 쇼핑센터 및 백화점, 중심지와 근접해 접근성이 좋은 호텔이다.

◦ 샹그릴라(Shangri-La)

도시명	시드니
주소	176 Cumberland Street, The Rocks, Sydney, NSW 2000
전화번호	+61 2 9250 6000
홈페이지	http://www.shangri-la.com/sydney/shangrila
숙박료	A\$ 250~450(일반객실, 1박 기준)
소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릿지 근처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윈야드(Wynyard)역 또는 써큘러키(Circular Quay)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 웨스턴 시드니(The Westin Sydney)

도시명	시드니
주소	1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전화번호	+61 2 8223 1111
홈페이지	http://www.westinsydney.com

숙박료	A\$ 220~350(일반객실, 1박 기준)
소개	시드니 시내 중심가에 있으며, 주변으로 쇼핑센터 및 각종 사무실들이 즐비하다. 윈야드(Wynyard)역에서 도보 5분, 마틴플레이스(Martin Place)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 하얏트 리젠시(Hyatt Regency Sydney)

도시명	시드니
주소	161 Sussex Street Sydney NSW 2000
전화번호	+61 2 8099 1234
홈페이지	https://www.hyatt.com/en-US/hotel/australia/hyatt-regency-sydney/sydrs
숙박료	A\$ 180~250(일반객실, 1박 기준)
소개	시드니 시내 중심가 달링하버에 위치하고 있으며, 타운홀(Town Hall)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레노베이션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의 시설이 깨끗하며 주변에 고객 미팅이 가능한 카페도 다수 위치하고 있다.

○ 메리톤 스위트(Meriton Suites)

도시명	시드니
주소	528 Kent St, Sydney NSW 2000
전화번호	+61 2 8263 5500
홈페이지	https://www.meritonsuites.com.au/our-hotels/nsw/
숙박료	A\$ 140~250(일반객실, 1박 기준)
소개	시드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비스 아파트먼트 호텔로 알려져 있다. 시드니 CBD에는 Kent street과 World Tower 두 개 지점이 있으며 객실 안에 키친과 냉장고, 세탁기 등이 구비되어 있어 장기 숙박시 유용하다.

〈자료원 : 호텔별 홈페이지〉

- 게스트하우스

○ 오지하우스 게스트하우스(OZiHOUSE)

도시명	멜버른
주소	176 Hoddle St, Abbotsford VIC 3067
전화번호	+61 3 9867 6882
홈페이지	https://ozihouse.com/ozihouse
숙박료	A\$ 30(1인당, Room 타입에 따라 상이)
소개	2012년에 설립된 멜버른 최초로 호주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한인경영의 장,단기 체류가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로써 모든 지점이 멜버른 시티에서 대중교통으로 10분 내외에 위치해 있다.

○ 다나네 테라스하우스(Danane Terrace House)

도시명	시드니
주소	9 Crystal Street Waterloo NSW 2017
전화번호	+61 434 311 665
홈페이지	https://www.dananeterracehouse.com/
숙박료	A\$ 80(싱글룸)
소개	시드니공항에서 2정거장 거리의 테라스하우스로 시내와도 가까워(기차 2-3정거장) 단기 여행자 및 해외 출장자들에 적합하다.

○ 시드니 한우리 게스트하우스(Hanwoori Guest House)

도시명	시드니
주소	460 Old Northern Rd, Dural NSW 2158
전화번호	+61 2 8443 0188
홈페이지	https://www.myhanwoori.com
숙박료	A\$ 45(1인당, Room 타입에 따라 상이)
소개	시드니 시내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근처 비즈니스 파크로 이동할 계획인 출장자들에 적합하다.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차로 1시간 20분 가량 소요되며, 숙소는 1인실에서부터 3인실까지 다양하다.

〈자료원 :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

사. 치안

치안상황

호주에서는 법적으로 흥거나 충기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전반적으로 치안 상태가 양호하나, 유흥가에는 혼자 다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야간에는 시내에서도 그룹으로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주말에는 음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괜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호기심에 주말에 유흥가를 전전하는 행위는 불행한 사고에 휘말릴 수 있으니 자제하도록 한다. 호주는 경찰의 권한과 권위가 보장돼 있어 범죄자들도 경찰을 상당히 두려워한다. 혹시 경찰의 조사를 받거나 연행을 당할 경우 반항하지 않고 침착하게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다. 호주에도 마약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유흥가 등지를 중심으로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호주에서도 마약은 불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클럽이나 술집에서 낯선 사람이 주는 약이나 음료를 절대로 받아먹어서는 안 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 안전한 곳에 정차: 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시켜야 한다. 사고 현장을 그냥 떠나는 것은 호주법상 범법 행위로 간주한다. 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경고등을 켜고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이 되지 않도록 차가 정차해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 체크: 본인을 포함하여 상대방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가 안전한지도 확인한다. 만약, 부상자가 긴급한 위험 상황에 처해있지 않은 경우 선불리 부상자를 옮기지 않도록 한다.

○ 긴급 구조 서비스 및 경찰에 전화: 부상자가 발생하였거나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나 마약을 복용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이 차량을 멈추지 않거나 개인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000을 통해 긴급 구조 센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 정보 교환: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구급차를 부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많다.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상대방과 여전히 연락처를 교환할 필요가 있으며 양측 모두 아래 사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 사고 날짜, 시간 및 장소
- 상대방 운전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보험회사, 차량 등록번호, 차량 색깔과 제조사 및 모델명)
- 상대방 운전자가 차량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음)
- 경찰이 출동한 경우 경찰관의 이름, 경찰서, 연락처

○ 보험회사에 연락: 본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가능한 한 빨리 연락을 취해야 한다.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 이름, 연락처, 차량 소유주와 상대방 운전자의 면허번호
- 차량 정보(차량 등록번호, 차량 색깔, 차량 제조사 및 모델)
-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 정보
- 사고 개요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여권 재발급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신청에서 발급까지 통상 3~4주가 소요(본인 비용 부담으로 DHL 서비스 이용 시 1~2주)된다. 출국이 임박한 경우, 단수여권 신청이 가능하나, 여권용 사진 2매 및 호주에서 출국하는 비행기 표가 추가로 요구된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여권 재발급 신청서(대사관/영사관 홈페이지 및 공관 내 구비)
- 한국 또는 호주 신분증(없을 경우 지문으로 확인 가능)
- 여권 사진(공관에서 여권 사진 촬영 가능(무료))
- 여권수수료(여권 형태 및 신청자 연령 등에 따라 A\$ 18~63.6으로 현금만 가능)

주호주 한국대사관 호주 수도인 캔버라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사관은 시드니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공관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주호주 한국대사관: +61-2-6270-4100
- 시드니총영사관: +61-2-9210-0200
- 주멜번대한민국분관: +61-3-9533-3800

3) 응급 전화번호

호주의 응급 전화번호는 경찰, 소방서, 구급차 모두 000번으로 통합돼 있다.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전화 000번을 누르고 Police(경찰), Ambulance(응급차), Fire(화재) 중 상황을 말하면 안내원이 필요한 서비스로 바로 연결해 준다. 000 서비스 이용은 무료이나, 응급실 이용 등 개인 관련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현지의 의료비는 앰불런스를 부를 경우 A\$ 400~1,000을 내야 하며 응급치료비도 상당히 비싸다.

4) 코로나19에 의한 안전여행 경보(2020년12월 기준)

호주 정부는 2020년3월20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호주 입국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교부는 호주를 '특별여행주의보' 국가로 지정하였다. 호주로의 입국은 호주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그리고 그들의 직계가족만 입국 가능하며 직계가족의 경우에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한 입국 허가신청이 필수이다. 호주에 입국하는 모든 이는 각 주정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해야 하며 그 비용은 주마다 상이하나 입국자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교통과 학군 등 입지를 고려

호주에서 집을 구하는 데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가장 중요한 예산 이외에도 자녀가 취학할 학교의 위치, 전철(City rail)역과의 거리,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호주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취학 아동이 있거나 또는 직장에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 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지역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주택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2) 주요 주택 중개 사이트

호주에서 주택 물색은 인터넷 부동산 매물 사이트인 Domain.com.au 또는 Realestate.com.au 에 올라오는 임대 광고를 검색하여 얻거나 지역마다 체인을 가지고 있는 Ray White, First National 등과 같은 지역 부동산을 통하여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상에서 매물 정보를 게재한 해당 부동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정보와 인스펙션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다. (주요 웹사이트: <http://www.domain.com.au> 또는 <http://www.realestate.com.au>)

3) 주택 임대 신청 과정

○ 방문하여 확인하기

호주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달라 마음에 드는 주택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집들을 많이 보는 것이 선불리 쉽게 결정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문 확인을 인스펙션(Inspection) 이라고 부르며 인터넷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서 방문 신청을 하거나 해당 매물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인스펙션 날짜와 시간을 정해야 한다. 인스펙션 당일에는 해당 매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방문객들과 함께 짧은 시간 내에 집을 돌아봐야 하므로 꼼꼼하게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임대 수요가 높을 경우, 한 매물에 여러 임대인들이 임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 때에는 해당 주인이 계약할 임대를 선택하게 된다.

○ 신청서 제출

임대물의 경우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을 때 바로 신청서(Application)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요자가 많이 몰리는 경우는 가능한 한 임대인이 선택하기 좋은 정보를 작성해야 주인에게 선택될 확률이 높다. 최근 임대 기록, 보증인, 직업, 연 수입 등의 정보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고, 100포인트 이상의 신분증 서류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4건의 임차인 기록이 40포인트, 여권이 30포인트, 호주 운전면허증이 30포인트, 재직증명서 20포인트, 의료보험카드 10포인트, 자동차 등록증 10포인트 등이다. 이민자들의 경우 호주에서의 임대 기록이 없는 대신에 몇 개월 분의 임차료를 선불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신규 주택 건설이 부진한 반면 해외로부터의 인구 유입은 급증하고 있어 도시 지역의 경우 집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인기 거주 지역의 경우 임차 매물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 보증금 및 집세 내기

호주의 집세는 1주 단위로 계산된다. 즉 주당 400 혹은 700호주달러 정도 하는 식이다. 일단 신청서가 통과되면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는 서류상 집주인과 하는 것이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서 작성 및 관련 비용 접수 등의 모든 일을 대행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집주인

이 부담한다. 집세 납입 주기는 보통 2주 단위로 납입하나 4주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증금(Bond/4주분의 임차료)과 월세(Rent/1개월분 임차료)가 전부이다. 보증금은 계약 시 지불하고 계약 종료 시 돌려받게 되나, 퇴거 시 집의 상태에 따라서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일부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최초 계약 시 집의 상태에 대한 안전 점검양식(inspection form 또는 condition report)을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해당 양식 작성 시 임차인은 추후를 대비하여 세심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여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요시 사진 촬영을 해 해당 양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매물을 점검하고 최종 결정을 한 후 계약을 맺고 입주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다. 호텔 비용이 매우 높음을 감안할 때 한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에 거주하면서 제반 사항을 해결하고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권한다. 4인 가족 기준 1실의 한 달 민박료는 식사 포함 1,500호주달러 전후이다.

전화

일반 전화라인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텔스트라 또는 옵터스에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가 있다. 텔스트라에 비해 옵터스는 서비스 가능지역이 한계가 있으나, 텔스트라에 비해 기본요금과 통화료가 저렴한 편이다. 신청 시에는 거주지 확인을 위하여 주택 임차 계약서를 통해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 보통 신청 시 새로운 전화번호를 받게 되지만, 실제 개통까지는 1-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힘들 경우에는 한국인 통역을 바꿔달라고 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http://www.telstra.com.au> 또는 <https://www.optus.com.au>) 시드니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통신서비스 회사가 다수 있는 바, 이들의 도움을 얻어 전화 신청은 물론 인터넷 연결(NBN)까지 해결할 수 있다.

전압/플러그

전압은 240V, 주파수는 50Hz이며 플러그는 3구 콘센트이다. 이중 아래 1구는 접지로 쓰이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220V, 60Hz, 2구 콘센트이다. 현지에서 변압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 한인(교민) 식품점을 이용하면 2~5호주달러 사이로 저렴한 제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만약, 현지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구매하고자 할 경우, 트래블 어댑터(Travel Adaptor)를 요청하면 되며 가격은 25~50호주달러로 다양하다. 가정용 교류제품은 표시 전압은 평균이기 때문에 20V의 차이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전열제품 같은 전력소모가 큰 제품은 호주에서 사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현지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식수

일반적으로 호주 식당에서는 탭 워터(Tap Water)라고 하여 수도물을 무료 식수로 제공한다. 이처럼 많은 호주인들은 수도물도 양호하기 때문에 식수로 통상 마신다. 생수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PB(Private Brand) 제품이나 일반 생수 브랜드 제품 모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호주 생활에 있어 자동차 구입은 필수라 하겠다. 대중 교통망은 전반적으로 시설 면, 용량 면에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차량 구입에 있어 우선 결정할 사항은 신차를 구입할 것인지 중고차를 구입할 것인지 하는 것인데, 호주의 경우 중고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이는 재판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신의 자금 사정이나 체제 기간 등에 맞추어 결정하면 된다.

시드니 지역의 경우 중고차 매매 점은 파라마타 로드(Parramatta Road), 멜버른은 링우드(Ringwood)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소재해 있다. 그 외 자동차 브랜드별로 한국인 담당자들이 한 명씩은 근무하고 있어 영어를 못 해도 차량 구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중고차 매매로 가장 대표적인 웹사이트로 www.carsales.com.au, www.carsguide.com.au 등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매물의 가격이 딜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이때 사고기록, 차량 보증기간, 차량 등록 기한, 명의 이전 문제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해당 사이트는 호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고차 거래 사이트로 성장하면서 개인이 아닌 딜러들이 더욱더 많이 활개를 치고 있어 최대 판매 및 구입자가 딜러가 되어 좋은 물건은 좋은 가격으로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경매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 차 상태를 잘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경매를 통해 차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경매 정보는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을 검색하고 경매 해당 요일에 경매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입찰을 참여하면 된다. (관련 홈페이지: www.pickles.com.au 또는 www.governmentauctions.com.au)

차량가격

호주는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높아 비교적 자동차 가격이 높은 편이다. 특히 고급 차의 경우, 고급차세(luxury car tax)가 적용되어 한국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중고차 구매 및 판매 시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 카세일즈: www.carsales.com.au
- 드라이브: www.drive.com.au

차량 가격은 출시연도, 브랜드 및 모델별로 상이하나, 예시로 2020년 11월 기준 Carsales 홈페이지에서 파악한 2019년 출시 현대 소나타(세단) 프리미엄 오토의 신차 가격은 평균 35,000호주달러이고, 2019년 출시된 현대 소나타 액티브 모델은 평균 23,000호주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25세 이상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해 '운전경력자인정(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 제도를 시행하여 한국 운전 면허증을 호주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준다. NSW주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4.5톤 이하 트럭, 12인승 이하 승합차 면허에 해당하는 보통 면허이며, 임시체류자의 경우 한국운전 면허증 원본과 영문번역본(대사관/총영사관 공증 필요)이 있으면, 비자 기간 내 또는 운전면허 만료일까지 운전이 가능하므로, 교환할 필요는 없다.

교환 발급 시, 한국 운전면허증은 반납 및 천공처리 되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각 주별 운전면허 발급신청서
- 한국 운전 면허증 원본 및 영문번역본(영문번역본은 NATTI 번역인증, 대사관/총영사관 번역문 인증을 인정하나, 국제운전면허증도 영문번역본으로 인정함)
- 신분증명서(여권, Medicare 카드)
- 각주 관할 지역 내 거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름과 주소가 명기된 임대계약서 전기, 전화 등 기타 유틸리티 납부통지서 등)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 신청서(온/오프라인 수령 가능)

본격적으로 호주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주행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필기시험은 한국어로도 응시할 수가 있고, 기출 문제가 교통 관리국 홈페이지에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합격에 큰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주행 시험의 경우 통상 몇 주 정도 개인 강사에게 수업을 받은 후 응시하게 된다. 최근 초보운전면허(P 면허) 소지자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오에 따라, 실기 시험에 대한 평가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편이다.

NSW주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시험 응시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6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운전하여야 한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된 한국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관련 기관: <http://www.rms.nsw.gov.au/>)

VIC주에서는 2019년 10월 29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도로 안전법에 따라,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현 소지 비자 상태와 상관없이 VIC주에 거주한 지 6개월 이내에 자신의 면허증을 빅토리아주 운전면허증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 (관련 기관: <http://www.vicroads.vic.gov.au/>)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Commonwealth 은행: 호주 주요 은행 중 하나로 지역 내 다수의 ATM과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 Westpac 은행: 호주 주요 상업 은행 중 하나로 뉴질랜드에서는 두 번째로 큰 은행이기도 하다.
- NAB 은행: 빅4(BIG4)라 불리는 호주 주요 상업 은행 중 하나로 자산 가치만 세계 41위를 차지하고 있다.
- ANZ 은행: Australia and New Zealand 은행의 준말로 호주 빅4 은행에 속해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가장 큰 은행이다.

계좌 개설방법

호주의 은행은 NAB(National Australia Bank), Commonwealth Bank, Westpac, ANZ 등이 있으며, 은행에 여권을 가지고 가면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서 은행카드(Keycard)가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인터넷 뱅킹, 수표책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은행계좌 개설 시 반드시 거주지 주소를 요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도 앞서 언급한 민박집 주소를 활용할 수 있다. 호텔 주소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한국 주소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나 차후 계좌 내역서(Bank statements) 송부, 수표책 송부 시 여러모로 번거로울 수가 있다.

호주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행은 Commonwealth Bank와 Westpac 이며, 가장 많은 지점과 ATM 기계를 보유하고 있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호주는 EFTPOS라는 전자 결제 시스템이 비교적 생활화 되어있어 굳이 ATM을 사용하지 않아도 매장에서 직접 결제는 물론 돈을 찾을 수가 있다.

호주 10대 기업 순위 안에 호주의 주요 은행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호주는 선진적인 금융감독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으며 대형 광산 투자 및 인프라 투자 수요가 많아 전문 금융기관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수수료가 없는 일반 계좌들이 주요 은행들로부터 다수 출시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해 입출금할 수 있는 계좌(NAB: iSaver, CBA: NetbankSaver 등)들이 비교적 높은 이자율을 마케팅 전략으로 삼아,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집세 납부는 본인 은행 계좌로부터 자동 이체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며 현금 혹은 수표로 해당 은행에 직접 내거나, 혹은 최초 소개받은 부동산에 가서 현금 혹은 수표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없음.

- 현지학교

o 맥किन 공립학교(McKinnon Secondary College)

도시명	멜버른
커리큘럼	7학년부터 12학년 까지 과정으로 중고등교육에 해당한다. 남녀공학이며 멜버른 시내에서 남동쪽으로 12km 거리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이다. 미술, 음악, 스포츠 등의 특별활동을 제공한다.
학비	약 A\$ 16,200~18,200/연
홈페이지	https://www.mckinnonsc.vic.edu.au/
비고	중고등학교로 학년에 따라 학비가 상이하다. 추가비용(영어프로그램, 지원신청서, 보험, 서비스 비용, 교복 등)이 발생한다.

o 발원 고등학교(Balwyn High School)

도시명	멜버른
커리큘럼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과정으로 중고등교육에 해당한다. 남녀공학이며 멜버른 시내에서 15km 떨어진 발원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통상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수업을 한다. 다양한 커리큘럼과 음악, 스포츠, 연극, 리더십 프로그램 등의 특별활동을 제공하는 명문 고등학교이다.
학비	약 A\$ 16,200~18,200/연
홈페이지	https://www.balwynhs.vic.edu.au/
비고	중고등학교로 학년에 따라 학비가 상이하다. 추가비용(영어프로그램, 지원신청서, 보험, 서비스 비용, 교복 등)이 발생한다.

o 채스우드 공립학교(Chatswood Public School)

도시명	시드니
커리큘럼	초등학교는 만 5~12세의 학생이 다닐 수 있으며, 이는 유치원(만 5세)에서 6학년까지 이른다. 통상 오전 8시 55분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을 한다. 해당 학교는 시드니 채스우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희망 학생들은 방과 후 음악 및 클럽 활동 등의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학비	약 A\$ 13,400/연
홈페이지	http://www.chatswoodps.nsw.edu.au
비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추가비용(지원신청서, 보험, 서비스 비용, 교복 등)이 발생한다.

o 버우드 여자고등학교(Burwood Girls High School)

도시명	시드니
커리큘럼	7학년부터 12학년 까지 과정으로 중고등교육에 해당한다. 여자 고등학교로 수업 시작은 오전 8시 45분부터 3시 15분까지이다. 댄스, 스포츠, 악기 등 다양한 특별활동을 제공한다.
학비	약 A\$ 14,800~16,600/연

홈페이지	http://web3.burwoodg-h.schools.nsw.edu.au/
비고	중고등학교로 학년에 따라 학비가 상이하다. 추가비용(영어프로그램, 지원신청서, 보험, 서비스 비용, 교복 등)이 발생한다.

○ 애쉬필드 남자고등학교(Ashfield Boys High School)

도시명	시드니
커리큘럼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과정으로 중고등교육에 해당한다. 남녀공학이며 시드니 스트라스필드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통상 오전 8시 55분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을 한다. 미술, 스포츠 등의 특별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학비	약 A\$ 14,800~16,600/연
홈페이지	https://ashfieldbo-h.schools.nsw.gov.au/
비고	중고등학교로 학년에 따라 학비가 상이하다. 추가비용(영어프로그램, 지원신청서, 보험, 서비스 비용, 교복 등)이 발생한다.

<자료원 : 주정부교육부 및 학교별 홈페이지>

마. 병원

○ 알프레드 병원(Alfred Hospital)

도시명	멜버른
주소	55 Commercial Rd, Melbourne VIC 3004
전화번호	+61-3-9076-2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www.alfredhealth.org.au

○ 로얄 어린이 병원(Royal Children's Hospital)

도시명	멜버른
주소	50 Flemington Rd, Parkville VIC 3052
전화번호	+61-3 -9345-5522
진료과목	소아과
비고	홈페이지: www.rch.org.au

○ 멜버른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Hospital Melbourne)

도시명	멜버른
-----	-----

주소	41 Victoria Parade, Fitzroy VIC 3065
전화번호	+61-3- 9231-22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www.svhm.org.au

○ 시드니 빈센트 병원(St Vincent's Hospital Sydney)

도시명	시드니
주소	390 Victoria Street Darlinghurst NSW 2010
전화번호	+61-2-8382-11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www.svhs.org.au

○ 이스트우드 로얄병원(Royale Eastwood Medical Centre)

도시명	시드니
주소	Suite 101, Level 1 2 Rowe St Eastwood NSW 2122
전화번호	+61-2-9858-3877
진료과목	일반진료
비고	홈페이지: https://royalehealth.com.au 한국의사 있음

○ 노웨스트 사립 병원(Norwest Private Hospital)

도시명	시드니
주소	11 Norbrik Drive, Bella Vista NSW 2153
전화번호	+61-2-8882-8882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www.norwestprivatehospital.com.au

<자료원 : 병원별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채드스톤(Chadstone)

도시명	멜버른
주소	1341 Dandenong Rd, Chadstone VIC 3148
홈페이지	https://www.chadstone.com.au
비고	멜버른 남동쪽에 위치한 호주 최대 규모의 쇼핑센터로 백화점, 리테일매장, 식당, 슈퍼마켓, 극장,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춘 종합 쇼핑몰이다.

◦ 엠포리움 멜버른(Emporium Melbourne)

도시명	멜버른
주소	287 Lonsdale St, Melbourne VIC 3000
홈페이지	https://www.emporiummelbourne.com.au
비고	호주 멜버른의 중심지에 위치한 고급 쇼핑센터로 마이어와 데이비드 존스 백화점 사이에 위치한 6층 규모의 건물에 명품매장, 리테일매장, 식당,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추고 있다.

◦ 웨스트필드 시드니(Westfield Sydney)

도시명	시드니
주소	Pitt St Mall and, Market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westfield.com.au
비고	시드니 CBD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급 브랜드가 다수 입점해 있다. Westfield Sydney는 시내 중심가 외에도 주요 지역에 다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 데이비드 존스(David Jones)

도시명	시드니
주소	86/108 Castlereagh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davidjones.com
비고	시드니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Westfield Sydney와 연결되어 있어 이동이 용이하다. 매장 내 다양한 호주 및 국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하에는 각종 식료품도 판매하고 있다. 시내 중심가 외에도 주요 지역에 다수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 마이어(Myer)

도시명	시드니
주소	436 George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myer.com.au
비고	시드니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David Jones와 같이 Westfield Sydney와 연결되어 있다.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다. 시내 중심가 외에도 주요 지역에 다수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 식품점

○ 울워스(Woolworths)

도시명	멜버른
주소	Cnr Lonsdale Street and, Swanston St, Melbourne VIC 3000
취급 식료품	과일, 육류, 생선, 스낵, 생필품 등
비고	호주 최대 마트 중 하나로 호주 전지역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매장에 따라 오후 10~12시까지 운영한다.

○ 콜스(Coles)

도시명	멜버른
주소	Central, 211 La Trobe St, Melbourne VIC 3000
취급 식료품	과일, 육류, 생선, 스낵, 생필품 등
비고	호주 최대 마트 중 하나로 전역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매장에 따라 오후 10~12시까지 운영한다.

○ 울워스(Woolworths)

도시명	시드니
주소	Park St and, George St, Sydney NSW 2000
취급 식료품	과일, 육류, 생선, 스낵, 생필품 등
비고	호주 최대 마트 중 하나로 호주 전지역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매장에 따라 오후 10~12시까지 운영한다.

○ 콜스(Coles)

도시명	시드니
주소	650 George St, Sydney NSW 2000
취급 식료품	과일, 육류, 생선, 스낵, 생필품 등
비고	호주 최대 마트 중 하나로 전역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매장에 따라 오후 10~12시까지 운영한다.

○ Aldi(알디)

도시명	시드니
주소	1 Bay St, Broadway NSW 2007
취급 식료품	과일, 육류, 생선, 스낵, 생필품 등
비고	독일계 마트로 호주 유력 식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식품 및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울워스나 콜즈에 비해서는 제품의 종류나 규모면에서는 작은 편이다. 매장에 따라 오후 8~9시까지 운영한다.

- 기타 편의시설

○ Albert Park Driving Range

도시명	멜버른
주소	Aughtie Drive, Albert Park VIC 3206
홈페이지	https://albertparkdrivingrange.com.au
소개	골프장

○ 멜버른 스포츠 아쿠아틱 센터(Melbourne Sports & Aquatic Centre)

도시명	멜버른
주소	30 Aughtie Dr, Albert Park VIC 3206
홈페이지	https://melbournesportscentres.com.au/msac
소개	스포츠 센터

○ 피트니스 퍼스트(Fitness First)

도시명	시드니
주소	1 Shelley Stree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fitnessfirst.com.au
소개	헬스장 체인

○ 버진 액티브(Virgin Active)

도시명	시드니
주소	2/197 Pitt Street Mall,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virginactive.com.au
소개	헬스장 체인

○ 무어파크 골프(Moore Park Golf)

도시명	시드니
주소	Cnr Anzac Pde and Cleveland St Moore Park Sydney NSW 2021
홈페이지	http://www.mooreparkgolf.com.au
소개	골프장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년	2021-01-01	New Year's Day
건국 기념일	2021-01-26	Australia Day
노동절(빅토리아주)	2021-03-08	Labour Day(Victoria)
성 금요일	2021-04-02	Good Friday
부활절	2021-04-03	Easter Saturday
부활절	2021-04-04	Easter Sunday
부활절	2021-04-05	Easter Monday
국군의 날	2021-04-25	Anzac Day
여왕 탄생일	2021-06-14	Queen's Birthday
노동절	2021-10-04	Labour Day
멜버른컵(빅토리아주)	2021-11-02	Melbourne Cup(Victoria)
성탄절	2021-12-25	Christmas Day
박싱데이	2021-12-26	Boxing Day
박싱데이 대체휴일	2021-12-27	Additional Day
박싱데이 대체휴일	2021-12-28	Additional Day

〈자료원 : Destination NSW, Business Victoria〉

9. KOTRA 무역관 안내

시드니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Korea Trade Centre, Sydney. Suite 2404 Level 24, 1 Market St., Sydney NSW 2000
- 전화번호: +61-2-8233-4000
- 이메일: info@kotra.org.au
- 홈페이지: www.kotra.or.kr/KBC/sydney

공항-무역관 이동

- 방법 1: 택시 - Market Street 1번지 빌딩에서 하차하면 된다. 공항에서 무역관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30분, 택시요금은 약 55.00호주달러가 예상된다.
- 방법 2: 대중교통(기차) - 시드니 Kingsford 공항역(국제선 또는 국내선)에서 City 방향 기차를 이용해 Town Hall 역에서 하차한다. Market Street 방향 출구로 나온 뒤 Market Street를 따라 약 500m 도보로 걸어오면 왼편에 파란색 빌딩이 보인다. 해당 건물 24층에 무역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약 3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기차 편도요금, 피크타임 기준: Opal 카드 소지 시 18.48호주달러, 일반편도 경우 약 19.40호주달러 예상된다.)

멜버른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Korea Trade Centre, Melbourne. Level 12, 468 St. Kilda Rd, Melbourne, VIC 3004
- 전화번호: +61-3-9860-0500
- 이메일: account@kotramelbourne.org.au
- 홈페이지: www.kotra.or.kr/KBC/melbourne

공항-무역관 이동

- 방법 1: 택시 - 멜버른 공항에서 무역관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며, 택시요금은 약 55.00호주달러로 예상된다.
- 방법 2: 대중교통(Skybus 및 Tram) - 멜버른 공항에서 스카이버스를 타고 서던 크로스 스테이션에서 내린 후, 서던 크로스 스테이션 Collin Street 앞에서 Swanston Street 행 트램을 타서 Swanston Street에서 하차한다. 1번과 58번 트램(Tram)을 제외한 St. Kilda 행 트램으로 갈아탄 후 트램 24번 정류장에서 하차한다. 멜버른 무역관은 트램 24번 정류장 앞에 위치하고 있다(스카이버스 편도요금: 19.75호주달러, 트램은 마이키카드(Myki)카드를 6호주달러에 구매한 후 충전(A\$ 4.50 / 2시간, A\$ 9.00/ 1일)하여 사용한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